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20.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0. 7. 29~3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마친 국가결산보고서를 지난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심의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통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회는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473.1조원, 총지출은 485.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서, 지난 재정운용 상황을 검토·분석하여 그 방향성과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8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생활 SOC사업 등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I. 결산 개요 / 3

- 1. 현 황 3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7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8

II. 개별 사업 분석 / 9

- 1.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 반복적인 초과집행 개선 필요 9

[대통령경호처]

I. 결산 개요 / 15

- 1. 현 황 15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9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0

II. 개별 사업 분석 / 21

- 1.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 체계적 수행 필요 21



CONTENTS

[국회]

I. 결산 개요 / 27

- 1. 현 황 27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1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2

II. 개별 사업 분석 / 33

- 1. 출연기관 실집행률 제고 및 집행실적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33
- 2. 국회분관 열람시설 디자인 용역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6
- 3. 효과성 및 활용방안 검토 후 영상보고서 제작 필요 38
- 4.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집행지침에 위반되게 사용 41

[국가인권위원회]

I. 결산 개요 / 45

- 1. 현 황 45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49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50



CONTENTS

II. 개별 사업 분석 / 51

- 1. 인권 홍보 관련 영상 제작비를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 51
- 2. 예비비 집행 부진 53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I. 결산 개요 / 59

- 1. 현 황 59
-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67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68

II. 주요 현안 분석 / 69

-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 개선 필요 69
- 2. 임상연구비의 집행 관리 철저 필요 80
- 3. 검찰청 소관 예산의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집행의 문제점 89

III. 개별 사업 분석 / 96

- 1.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필요 96



CONTENTS

2. 자문료 집행 개선 및 외부 회의장 임차 재검토 필요	99
3. 인권국 기본경비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본경비 통합편성 문제	106
4. 검찰활동 프로그램 사업의 기타운영비 집행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109
5. 형사보상금 및 교정시설 공공요금의 연례적 아전용(증)을 통한 예산 집행 부적정 ...	113
6. 특별감찰관 장기간 공석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 부적정 ...	119
7.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24
8. 교도작업 미 작업자 등의 해소방안 강구 필요	130
9. 법적 근거 없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청 청사 무상사용 부적정	134
10. 범죄피해자 이전비 지원 사업 경찰청 이관 필요	139
※. 법무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143

[법제처]

I. 결산 개요 / 147

1. 현 황	147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 사항	151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2

II. 개별 사업 분석 / 153

1.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을 제고방안 마련 필요	153
2.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전문분야를 고려한 위촉 및 관리 필요	158
3. 청소년법제관 참여 학교 다양화 필요	161



CONTENTS

[감사원]

I. 결산 개요 / 167

- 1. 현 황 167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1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2

II. 개별 사업 분석 / 173

- 1.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이용 활성화 노력 필요 173

[대법원]

I. 결산 개요 / 181

- 1. 현 황 181
- 2.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88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90

II. 개별 사업 분석 / 191

-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의 효율적 운용 방안 강구 필요 191
- 2.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로의 전출 개선 필요 199
- 3.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 개선 필요 203
- 4.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이전비 집행의 문제 207
- 5. 확정적 소요가 발생한 경비의 미편성에 따른 예산조정 집행 부적절 210



CONTENTS

[헌법재판소]

I. 결산 개요 / 215

- 1. 현 황 215
- 2.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19
- 3. 2019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20

II. 개별 사업 분석 / 221

- 1. 상용직 근로자 관련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노력 필요 221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400만원이며, 3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4	94	94	328	328	0	0	100.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19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36억 6,900만원이며, 이 중 96.1%인 899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3,669	93,669	93,669	89,994	0	3,675	96.1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자산은 4,173억 3,100만원, 부채는 9억 3,000만원, 순자산은 4,164억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억 4,300만원, 일반유형자산 4,128억 1,800만원, 무형자산 32억 8,9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0억 8,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0억 500만원 (1.2%) 증가하였다. 이는 공시지가 반영에 따른 토지 재평가 등으로 인한 일반유형 자산 44억 8,000만원 증가, 소프트웨어 신규 취득 등으로 인한 무형자산 4억 1,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300만원, 장기충당부채 8억 7,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500만원(6.3%) 증가하였다. 이는 일용직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17,331	412,326	5,005	1.2
Ⅰ. 유동자산	143	38	105	276.3
Ⅱ. 일반유형자산	412,818	408,338	4,480	1.1
Ⅲ. 무형자산	3,289	2,879	410	14.2
Ⅳ. 기타비유동자산	1,081	1,071	10	0.9
부 채	930	875	55	6.3
Ⅰ. 유동부채	53	44	9	20.5
Ⅱ. 장기충당부채	877	831	46	5.5
순 자 산	416,400	411,450	4,949	1.2
Ⅰ. 기본순자산	323,523	323,523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5,599	35,856	△257	△0.7
Ⅲ. 순자산 조정	128,476	123,783	4,693	3.8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19년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37억 7,900만원(4.1%) 증가한 963억 7,700만원으로 프로그램 순원가 974억 2,600만원, 비배분 수익 10억 4,9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44억 500만원 증가하였고, 비배분비용은 전기 대비 2억 5,000만원 감소하였으며, 비배분수익은 전기 대비 3억 7,600만원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97,426	93,021	4,405	4.7
가. 프로그램 총원가	97,426	93,021	4,405	4.7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II. 관리운영비	0	0	0	0.0
III. 비배분비용	0	250	△250	△100.0
IV. 비배분수익	1,049	673	376	55.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96,377	92,598	3,779	4.1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96,377	92,598	3,779	4.1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19년도 기말순자산은 4,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4,900만원(1.2%) 증가하였는데, 기초순자산 4,114억 5,100만원에서 재정운영 결과로 인해 37억 7,900만원 감소하였고 채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인해 27억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조정항목에서 47억 3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9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411,451	410,132	1,319	0.3
II. 재정운영결과	96,377	92,598	3,779	4.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6,635	93,927	2,708	2.9
IV. 조정항목	4,692	△11	4,703	42,754.5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16,400	411,451	4,949	1.2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5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보좌하는 한편,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2019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운영비 비목 간 조정을 통한 예산현액 증액과 초과 집행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통상적인 적정 소요를 산출하여 예산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 반복적인 초과집행 개선 필요

가. 현 황

기본경비¹⁾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와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현액은 194억 3,100만원이며, 189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2019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110)	3,181	3,181	0	0	3,181	2,888	0	293
운영비(210)	8,320	8,320	0	△144	8,176	8,109	0	67
여비(220)	870	870	0	144	1,014	1,008	0	6
업무추진비(240)	840	840	0	0	840	820	0	20
직무수행경비(250)	2,918	2,918	0	0	2,918	2,866	0	52
보전금(310)	26	26	0	0	26	26	0	0
민간이전(320)	2,179	2,179	0	0	2,179	2,108	0	71
유형자산(430)	987	987	0	0	987	986	0	1
무형자산(440)	110	110	0	0	110	110	0	0
합 계	19,431	19,431	0	0	19,431	18,921	0	51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11-200

나. 분석의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는 운영비 비목 간 조정을 통한 예산현액 증액과 초과 집행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통상적인 적정 소요를 산출하여 예산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이후 최근 3년 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본경비의 운영비(210목)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운영비 비목 간 예산 조정을 통한 일반수용비 예산현액의 증액과 초과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

[2017~2019회계연도 기본경비 운영비(210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2017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수용비	1,784	1,784	0	470	2,254	2,242	0	11
공공요금및제세	1,686	1,686	0	△259	1,427	1,421	0	6
피복비	109	109	0	0	109	104	0	5
특근매식비	841	841	0	0	841	754	0	87
일숙직비	49	49	0	0	49	47	0	2
임차료	220	220	0	0	220	191	0	29
유류비	761	761	0	△215	546	527	0	19
시설장비유지비	373	373	0	0	373	324	0	49
재료비	392	392	0	0	392	330	0	62
복리후생비	448	448	0	0	448	399	0	49
일반용역비	139	139	0	0	139	105	0	34
관리용역비	251	251	0	4	255	254	0	1
기타운영비	239	239	0	0	239	222	0	17
비목	2018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수용비	1,928	1,928	0	453	2,381	2,371	0	10
공공요금및제세	1,588	1,588	0	△140	1,448	1,429	0	20
피복비	109	109	0	0	109	105	0	5
특근매식비	841	841	0	△100	741	723	0	18
일숙직비	49	49	0	0	49	49	0	1
임차료	429	429	0	△75	354	351	0	3

유류비	761	761	0	△220	541	537	0	5
시설장비유지비	373	373	0	0	373	369	0	4
재료비	392	392	0	52	444	444	0	0
복리후생비	448	448	0	△45	403	387	0	16
일반용역비	139	139	0	△10	129	120	0	8
관리용역비	253	253	0	0	253	241	0	12
기타운영비	230	230	0	8	238	237	0	1
비목	2019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수용비	2,364	2,364	0	280	2,644	2,625	0	19
공공요금및제세	1,585	1,585	0	△14	1,571	1,542	0	29
피복비	112	112	0	△9	103	103	0	0
특근매식비	841	841	0	△117	724	723	0	1
일숙직비	55	55	0	0	55	53	0	2
임차료	626	626	0	△43	583	583	0	0
유류비	798	798	0	△214	584	580	0	4
시설장비유지비	373	373	0	△23	350	349	0	1
재료비	405	405	0	12	417	417	0	0
복리후생비	448	448	0	△15	433	424	0	9
일반용역비	149	149	0	△8	141	140	0	1
관리용역비	335	335	0	6	341	339	0	2
기타운영비	230	230	0	1	231	231	0	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는 매년 예산 조정을 통하여 예산현액 증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 26.3%, 2018년도에 23.5%의 예산현액 증액이 이루어졌고, 2019년도에는 11.8%의 예산현액 증액이 이루어졌다.

예산 조정을 통한 본예산액 대비 예산현액 증액 규모가 개선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8.1%, 2019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22.6%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2019년도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23억 6,400만원으로 2018년도의 집행액 23억 7,100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전년도의 초과 집행분까지를 상당 부분 반영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처럼 매년 예산액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예산 비목의 집행에서 집행연도 중 예산 조정을 통한 예산현액의 증액과 초과 집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 예기치 못한 집행 소요에의 대응 등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본경비에서 초과 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 물품 구입, 간행물 등 구입, 비품 수선,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 지급,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지급 등에 사용하는 예산 항목으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본경비의 일반수용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통상적인 적정 소요를 산출하여 예산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억 2,300만원이며, 2억 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23	123	123	201	201	0	0	100.0
합계	123	123	123	201	201	0	0	100.0

자료: 대통령경호처

2019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23억 3,200만원(예비비 35억 6,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 2,700만원 포함)이며, 이 중 88.8%인 820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3억 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8,639	88,639	92,332	82,023	170	10,309	88.8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경호처 자산은 4,676억 8,900만원, 부채는 0원으로 순자산은 4,676억 8,9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465만원, 투자자산 4억 3,307만원, 일반유형자산 4,639억 1,935만원, 무형자산 32억 7,928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283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6억 400만원(2.2%) 감소하였다. 이는 선급비용 발생으로 인한 유동자산 800만원 감소,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으로 107억 8,000만원 감소, 무형자산 취득으로 1억 8,300만원 증가 등 106억 4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전기에 발생한 선수수익 기간 안분이 당기 발생하지 않아 전기 대비 200만원 감소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67,689	478,294	△10,604	△2.2
Ⅰ. 유동자산	15	23	△8	△34.8
Ⅱ. 투자자산	433	433	0	0.0
Ⅲ. 일반유형자산	463,919	474,699	△10,780	△2.3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3,279	3,096	183	△12.01
Ⅵ. 기타비유동자산	43	43	0	0.0
부 채	0	2	△2	△100.0
Ⅰ. 유동부채	0	2	△2	△100.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467,689	478,292	△10,603	△2.2
Ⅰ. 기본순자산	311,683	311,683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5,595	△15,333	△10,262	△66.9
Ⅲ. 순자산 조정	181,601	181,942	△341	△0.19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922억 9,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923억 4,800원, 비배분비용 1억 7,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억 2,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6억 2,100만원(5.27%) 증가한 922억 9,100만원이며, 프로그램순원가 및 비배분비용 등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대통령경호처 운영프로그램(599억 5,100만원)과 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프로그램(323억 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1억 7,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92,348	87,856	4,492	5.1
가. 프로그램 총원가	92,348	87,856	4,492	5.1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II. 관리운영비	0	0	0	0.0
III. 비배분비용	173	32	141	440.6
IV. 비배분수익	229	218	11	3.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92,291	87,670	4,621	5.3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92,291	87,670	4,621	5.3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4,782억 9,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676억 8,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06억 300만원(2.2%)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922억 9,1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3억 4,1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820억 2,900만원으로 감소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과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820억 2,9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66억 3,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억 4,1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478,292	480,228	△1,936	△0.4
II. 재정운영결과	92,291	87,670	4,621	5.3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2,029	86,045	△4,016	△4.7
IV. 조정항목	△341	△311	△30	△9.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67,689	478,292	△10,603	△2.2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이나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사항은 없다.

대통령경호처는 미래 경호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첨단 경호장비 도입 등 경호·경비역량 강화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완벽한 경호업무 수행에 중점을 두고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 미흡과 연간 집행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는 바, 대통령경호처는 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 체계적 수행 필요

가. 현 황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¹⁾은 청와대 경내·외 과학경호경비시설 구축 및 첨단 경호장비 개선을 통한 경호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 현액은 75억 2,300만원으로, 61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호장비시설 개선	7,489	7,489	34	0	7,523	6,111	170	1,242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분석의견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은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 미흡과 연간 집행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바, 대통령경호처는 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은 청사별·기타시설, 교육훈련시설 및 IT인프라시설의 개선을 위한 건설 사업과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231-302

취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9년도 건설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5%, 자산취득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9%로 두가지 유형의 사업 모두에서 집행이 부진하였다.

[2019회계연도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항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C/A)
경호장비시설 개선	건설비	3,382	2,759	0	623	81.5
	자산취득비	4,141	3,352	170	619	80.9
	합계	7,523	6,111	170	1,242	81.2

자료: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경비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설물 개선 등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군·경 작전요소 및 작전개념 변경 등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연도 공사 일부를 취소함에 따라 건설비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2019.11.25.~11.26.)로 3/4분기부터 경호안전통제단을 구성하고 대통령경호처 전직원이 대규모 행사 준비와 합동훈련에 참가하는 등의 사유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의 청와대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청와대 경비를 위한 군·경의 작전수행 계획과 상충될 가능성 또는 그에 미치게 될 영향과 같은 중요 사항은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상호 소통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2019년도 집행 현황에 따르면, 하반기 이후에 집행이 본격화되고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4분기 이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대통령경호처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 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4/4분기에 상당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불용과 이월이 수반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9회계연도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집행계획	438(11.1%)			2,944(74.3%)			549(13.9%)			28(0.7%)		
집행액	36	16	100	101	284	213	332	449	150	660	407	96
	152(4.3%)			598(17.1%)			931(26.6%)			1,823(52.0%)		

주: 연간 집행계획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연초에 수립한 예산 집행 계획 기준 분기별 집행 예정액이며, 집행액은 지출원인행위 기준 월별·분기별 실제 집행액
 자료: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대통령경호처는 사업계획 수립 시의 사전 검토 미흡이나 연간 집행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 집행으로 인하여 실적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호장비시설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회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6억 100만원이며, 37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1.9%인 34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8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601	2,601	2,601	3,785	3,477	308	0	91.9

자료: 국회

2019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487억 4,900만원이며, 이 중 90.9%인 5,895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129억 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2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국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19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40,904	640,904	648,749	589,543	12,910	46,295	90.9

자료: 국회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국회의 자산은 4조 8,971억 8,800만원, 부채는 209억원으로 순자산은 4조 8,762억 8,9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7억 7,700만원, 일반유형자산 4조 8,663억 7,100만원, 무형자산 299억 6,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8,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4,492억 500만원(42.0%)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토지 자산재평가 1조 4,194억 7,3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71억 8,700만원, 장기차입부채 118억 2,400만원, 장기충당부채 4억 2,3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4억 6,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1억 5,300만원(19.8%)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장기차입부채 금융리스부채 22억 3,1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국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4,897,188	3,447,983	1,449,205	42.0
Ⅰ. 유동자산	777	2,270	△1,493	△65.8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4,866,371	3,423,623	1,442,748	42.1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29,960	22,016	7,944	36.1
Ⅵ. 기타비유동자산	80	74	6	8.1
부 채	20,900	26,053	△5,153	△19.8
Ⅰ. 유동부채	7,187	9,303	△2,116	△22.7
Ⅱ. 장기차입부채	11,824	14,055	△2,231	△15.9
Ⅲ. 장기충당부채	423	658	△235	△35.7
Ⅳ. 기타비유동부채	1,465	2,037	△572	△28.1
순 자 산	4,876,289	3,421,930	1,454,359	42.5

자료: 국회

국회는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473억 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119억 3,000만원, 관리운영비 4,362억 7,100만원, 비배분비용 25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4억 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61억 9,300만원(4.2%) 증가한 6,473억 8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79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국회사무처운영 프로그램(960억 500만원), 의정지원활동 프로그램(901억 7,800만원), 국회도서관운영 프로그램(186억 1,300만원), 예산정책처운영 프로그램(38억 4,700만원), 입법조사처운영 프로그램(32억 8,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641억 9,300만원과 경비 720억 7,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국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211,930	205,580	6,350	3.1
II. 관리운영비	436,271	418,371	17,900	4.3
III. 비배분비용	2,510	60	2,450	4,083.3
IV. 비배분수익	3,402	2,896	506	17.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47,308	621,115	26,193	4.2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47,308	621,115	26,193	4.2

자료: 국회

국회의 2019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3조 4,219억 3,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조 8,762억 8,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4,543억 5,900만원(42.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261억 9,3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 역시 기초 대비 각각 541억 2,600만원, 1조 4,220억 4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 조달 등 재원의 조달 6,834억 6,600만원과 재원의 이전(국고이전이출) 34억 7,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조 4,216억 7,8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국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3,421,930	3,417,508	4,422	0.1
II. 재정운영결과	647,308	621,115	26,193	4.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79,989	625,863	54,126	8.6
IV. 조정항목	1,421,678	△326	1,422,004	436,197.5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876,289	3,421,930	1,454,359	42.5

자료: 국회

국회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지원**이 있다.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지원 사업은 보조금 사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2억 7,800만원이 감액(16억 2,900만원→13억 5,1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인사 및 운영지원**이 있다.

인사 및 운영지원 사업은 국회어린이집 직원의 시간 외 수당 시간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1억 1,200만원이 증액(46억 4,800만원→47억 6,000만원)되었다.

국회는 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② 의회주의를 실현하는 책임국회 정립, ③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민생국회 구현, ④ 국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 실현, ⑤ 국익창출을 위한 의회외교 전개를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국회사무처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금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도서관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디자인 설계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기술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출연기관 실집행을 제고 및 집행실적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 필요

가. 현 황

인사 및 운영지원 사업¹⁾은 국회사무처의 인사, 지출 등의 업무와 국회어린이집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국회사무처는 인사 및 운영지원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48억 7,600만원 중 47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사 및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사 및 운영 지원	4,760	4,760	0	116	4,876	4,762	0	114

자료: 국회사무처

나. 분석의견

국회사무처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금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031-301

국회사무처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²⁾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금 예산 8,8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다. 출연금 교부일과 교부금액은 8월 19일에 1차 8,360만원, 12월 12일에 2차 440만원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방문·상담평가 후 개인별 맞춤형 기기 등을 지원한다.

그런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연금 집행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출연금 집행률은 59.1%로 집행실적이 부진하였고, 지원금 기준으로 2차 출연금이 교부되는 시점의 집행액은 7,800만원 중 1,849만원로 집행률이 23.7%에 불과하여 2차 출연금 440만원은 교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8,800만원을 동 공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시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부진이 언급되어 2차 교부액을 미교부할 것을 동 공단에 통보하였으나 이사회 개최 불가 등 공단 내부사정으로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출연금 나머지 전액을 교부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고, 동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공단에 출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교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2019년도 예산 집행 시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기기지원이 9월 20일에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늦게 추진되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집행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국회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출연금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능력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019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교부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	78	44	34	56.0
	운영비	10	8	2	82.6
	계	88	52	36	59.1

자료: 국회사무처

[2019회계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중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만원)

일자 (결정안 승인일)	품목	집행액
9.20.	센스원 등 5종	510
11.19.	소형계단운반기(EG-C171V) 등 4종	1,339
11월 19일 기준 합계		1,849
12.19.	세컨더리컨트롤 SO 등 10종	2,522
12월 19일 기준 합계		4,371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도서관자료보존 및 열람 사업¹⁾은 장서관리 및 열람 등 도서관업무 지원, 복컨베이어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서가교체 등 열람환경개선, 기록물보존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보존 및 열람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6억 6,200만원 중 16억 2,1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도서관자료보존 및 열람 사업의 일반용역비 2019년도 예산현액 3억원 전액이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도서관자료보존 및 열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도서관자료보존 및 열람	1,665	1,665	0	△3	1,662	1,621	0	41
일반용역비	241	241	0	59	300	300	0	0

자료: 국회도서관

나. 분석의견

국회도서관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디자인 설계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3033-301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보존 및 열람 사업의 일반용역비로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열람공간 디자인 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5,0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9년 도서관자료보존 및 열람 사업의 일반용역비 집행 현황 일부]

(단위: 백만원)

계약명	수행기간	집행액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열람공간 디자인 설계 용역	2019.9.~12.	50

자료: 국회도서관

그런데 국회도서관의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자료와 각목명세서 등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에 위치한 국회도서관의 자료보존과 열람에 관련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을 뿐 부산에 공사 중인 국회도서관 분관과 관련한 예산은 없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예산에 편성하고 있지 않는 사업을 자의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사업¹⁾은 주요현안이 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적시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9억 4,700만원 중 8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9,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939	939	8	0	947	852	0	95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나. 분석의견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작한 영상보고서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상보고서 효과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과제’ 등 기존 발간보고서 중 5편을 선정하여 영상보고서를 제작하면서 일반용역비 1,915만원을 집행하였다. 동 영상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통하여 시청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서화된 보고서는 전문지식 등 심도 깊은 내용은 전달할 수 있으나 일반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영상보고서를 시범 사업으로 수행하였다는 입장이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5032-301

[2019년 영상 보고서 제작 현황]

(단위: 천원)

보고서명	수행업체	집행액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과제	○ ○ ○ ○	9,350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 ○ ○ ○	9,800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운전면허 제재 관련 미국 사례 분석		
합계		19,150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영상보고서 제작비용은 문서보고서 제작비용의 3~4배 정도 소요되었다. 그런데 영상보고서 조회 수를 살펴보면, 조회 수가 최소 80회에서 최대 223회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적인 영역에 포함되는 보고서로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적은 조회 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9년 문서 및 영상 보고서 제작액 및 유튜브 조회수 현황]

(단위: 천원)

보고서명	문서제작 집행액	영상제작 집행액	유튜브 조회수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과제	415	9,350	115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1,650		80회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1,529		113회
소계	3,594		-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1,022	9,800	223회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운전면허 제재 관련 미국 사례 분석	1,191		217회
소계	2,213		-
합계	5,807	19,150	-

주: 조회수는 6월 16일 조회 기준임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

그러나 이런 이유는 국회 현안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 영상보고서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상기의 조회수는 전체 국회의원실 수를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준이고, 영상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시 저조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서보고서 보다 제작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 영상보고서를 제작하는 경우 그 효과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가. 현 황

입법조사처 정보화 사업¹⁾은 입법·정책관련 정보 제공 및 조사·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처 정보화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7억 7,800만원 중 7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입법조사처 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입법조사처 정보화	778	778	0	0	778	736	0	42
시설장비유지비	316	316	0	△3	313	296	0	18
관리용역비	91	91	0	0	91	89	0	2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나. 분석의견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기술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2,000만원 중 160만원을 기술평가위원 수당으로 집행하였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5033-500

[낙찰차액 발생 및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계약명	비목	낙찰액	낙찰차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2019년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사업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87	20	기술평가위원 수당 160만원
	관리용역비 (210-15)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그런데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평가위원 수당은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수용비 집행 지침]

구분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수용비 (210-01)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 위원회 참석비 , 업무용택시 이용요금 등 규정

자료: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러나 상기에 기술평가위원 수당은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설장비유지비나 관리용역비 비목에서 집행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인 불용처리를 우선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하게 낙찰차액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700만원이며,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7	17	17	12	12	0	0	1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9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89억 7,300만원이며, 이 중 93.1%인 362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19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6,683	36,683	38,973	36,268	223	2,482	93.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산은 77억 5,800만원이고, 부채는 없으며, 순자산은 77억 5,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00만원, 일반유형자산 24억 7,600만원, 무형자산 28억 6,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4억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7억 4,900만원 (29.1%) 증가하였다. 이는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취득으로 인한 무형자산 15억 1,500만원 증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및 제주출장소 물품 구매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억 5,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7,758	6,009	1,749	29.1
Ⅰ. 유동자산	3	4	△1	△25.0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2,476	2,324	152	6.5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2,860	1,345	1,515	112.6
Ⅵ. 기타비유동자산	2,420	2,336	84	3.6
부 채	0	0	0	0
Ⅰ. 유동부채	0	0	0	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7,758	6,009	1,749	29.1
Ⅰ. 기본순자산	6,009	5,547	462	8.3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7,066	31,828	5,238	16.5
Ⅲ. 순자산 조정	38,816	32,289	6,527	20.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70억 6,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70억 7,700만원, 수익은 비배분수익 1,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52억 3,800만원(16.5%) 증가한 370억 6,6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임차료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 총원가가 전년도 대비 52억 4,1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7,077	31,836	5,241	16.5
가. 프로그램 총원가	37,077	31,836	5,241	16.5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II. 관리운영비	0	0	0	0
III. 비배분비용	0	0	0	0
IV. 비배분수익	11	8	3	37.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7,066	31,828	5,238	16.5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7,066	31,828	5,238	16.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60억 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77억 5,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7억 4,900만원(29.1%)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52억 3,8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65억 2,7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기타비교환수익, 기타재원수익 등 재원의 조달 388억 2,8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A)	2018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6,009	5,547	462	8.3
II. 재정운영결과	37,066	31,828	5,238	16.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8,816	32,289	6,527	20.2
IV. 조정항목	0	0	0	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7,758	6,009	1,749	29.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인권현장상담센터 운영**, ② **아셈 글로벌에이징센터 운영**이 있다.

인권현장상담센터 운영 사업은 2019년도에 전국 1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3억 200만원이 감액(6억 8,800만원→3억 8,600만원)되었고, 아셈 글로벌에이징센터 운영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실시한 노인인권 실태조사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7,000만원 감액(7억 5,600만원→6억 8,6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다.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8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8,500만원이 2019년도 예산안에 다시 감액되어, 이를 2018년도 예산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증액(1억 1,500만원→2억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인권의 프리즘으로 보는 대한민국 100년 사업**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 역사와 관련된 책자 발간 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북한인권 분야를 반영한다.”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²⁾

2)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 ②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 보급 등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③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④ UN,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등에 소요되는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인권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여야 할 영상자료 제작비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관련 예비비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비 필요 시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재정당국에 예비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인권 홍보 관련 영상 제작비를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

가. 현 황

인권의식 향상 사업¹⁾은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관련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 향상 사업의 2019년도 예산액 6억 9,200만원 중 6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권의식 향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권의식 향상	692	692	0	0	692	669	0	2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분석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여야 할 영상자료 제작비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 홍보를 위한 위원회 결정례 영상 수정작업 등에 일반수용비 308만원(총 2건)을 집행하였다.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인권의식 향상 사업의 영상자료 제작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일자	과제명	수행자	집행액
1	2019.02.21.	위원회 결정례 영상 수정작업	넥스트플래닛	1,100
2	2019.06.11.	카드뉴스 영상 제작	이로이로 커뮤니케이션	1,980
합계				3,08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은 속기 등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이나 전문가 자문료 등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해서는 안 되고, 영상자료 제작은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편성 및 집행 지침]

(단위: 원)

비목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수용비 (210-01)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 (속기, 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등)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 위원회 참석비, 업무용택시 이용요금 등 규정 - 다른 비목 성격 경비 집행 금지
일반용역비 (210-14)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 시키는 비용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 시키는 비용

자료: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기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결정례 영상 수정작업 등은 영상자료 제작에 해당되므로 일반용역비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을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비목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¹⁾은 여성, 노인, 아동 및 이주노동자 등 인권보장 취약 집단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구제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34억 3,000만원 중 31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6,6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관련 예비비 18억 5,300만원을 배정받아 16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300만원을 불용하였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재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25일 출범하였고, 2021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19회계연도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취약분야 인권개선	1,637	1,637	0	325	1,853	3,430	3,165	0	266
예비비	0	0	0	0	1,853	1,853	1,690	0	16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심성택 예산분석관(fortoday@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3-300

나. 분석의견

예비비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비 필요 시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재정당국에 예비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정확한 소요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관련 예비비 집행률을 비목별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등 4개 비목의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류비(210-08)의 집행률은 2.7%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예비비가 필요한 경우 보다 면밀한 소요예산 추계를 통하여 재정당국에 예비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관련 예비비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배정액	조정액	배정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일반수용비(210-01)	1,077	-297	780	776	4	99.5
공공요금및제세(210-02)	18	-13	5	2	3	34.7
특근매식비(210-05)	8	0	8	5	3	62.1
임차료(210-07)	178	-26	152	146	7	95.5
유류비(210-08)	5	0	5	0	5	2.7
일반용역비(210-14)	0	336	336	336	0	100.0
기타운영비(210-16)	4	0	4	2	2	60.3
국내여비(220-01)	173	0	173	44	128	25.3
사업추진비(240-01)	40	0	40	40	0	99.9
직책수행경비(250-02)	16	0	16	14	2	89.4
특정업무경비(250-03)	31	0	31	24	6	79.7
일반연구비(260-01)	130	0	130	130	0	100.0
공사비(420-02)	48	0	48	48	0	99.9
자산취득비(430-01)	39	0	39	39	0	99.4
무형자산(440-00)	87	0	87	85	2	97.8
합계	1,853	±336	1,853	1,690	163	91.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재작성

법제사법위원회



부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7,411억 8,000만원이며, 1조 4,300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9%인 1조 4,144억 2,200만원을 수납하고 156억 6,2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614,363	1,614,363	1,614,363	1,315,953	1,300,335	15,618	0	98.8
교도작업특별회계	126,817	126,817	126,817	114,131	114,087	44	0	99.9
합계	1,741,180	1,741,180	1,741,180	1,430,084	1,414,422	15,662	0	98.9

자료: 법무부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9,418억 2,700만원이며, 이 중 93.0%인 3조 6,770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152억 4,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94억 8,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796,381	3,796,381	3,815,010	3,576,895	14,728	223,387	93.8
교도작업특별회계	126,817	126,817	126,817	100,203	515	26,099	79.0
합계	3,923,198	3,923,198	3,941,827	3,677,098	15,243	249,486	93.5

자료: 법무부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011억 200만원이며, 1,031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4%인 1,025억 5,000만원을 수납하고 6억 3,2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102	101,102	101,102	103,182	102,550	632	-	99.4

자료: 법무부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011억 200만원이며, 이 중 101.4%인 1,025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1,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102	101,102	101,102	102,550	71	1,012	101.4

자료: 법무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261억 3,500만원 (19.0%)이 감소한 1조 3,670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57억 6,400만원(5.9%)이 감소하였다.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449,622	1,689,510	1,689,510	1,363,507	△326,003	△86,115
기금	3,173	3,656	3,656	3,524	△132	351
합계	1,452,795	1,693,166	1,693,166	1,367,031	△326,135	△85,764

자료: 법무부

2019회계연도 법무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228억 800만원(5.7%)이 감소한 3조 6,589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33억 7,900만원(2.5%)이 감소하였다.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662,982	3,784,382	3,784,382	3,562,658	△221,724	△100,324
기금	89,378	97,407	97,407	96,323	△1,084	6,945
합계	3,752,360	3,881,789	3,881,789	3,658,981	△222,808	△93,379

자료: 법무부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법무부의 자산은 10조 4,302억 6,300만원, 부채는 1,923억 300만원으로 순자산은 10조 2,379억 6,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111억 7,400만원, 투자자산 70억원, 일반유형자산 10조 2,038억 6,900만원, 무형자산 674억 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992억 3,500만원(4.0%) 증가하였다. 이는 국유재산 재평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4,101억 증가, 현금및현금성자산 감소 등에 따른 유동자산 110억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323억 7,900만원, 장기차입부채 349억 2,600만원, 장기충당부채 1,249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6억 1,300만원(3.0%)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리스부채 증가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40억 9,500만원 증가 및 유동부채 26억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0,430,263	10,031,028	399,235	4.0
Ⅰ. 유동자산	111,174	122,175	△11,001	△9.0
Ⅱ. 투자자산	7,000	15,000	△8,000	△53.3
Ⅲ. 일반유형자산	10,203,869	9,793,768	410,101	4.2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67,404	61,834	5,570	9.0
Ⅵ. 기타비유동자산	40,816	38,251	2,565	6.7
부 채	192,303	186,690	5,613	3.0
Ⅰ. 유동부채	32,379	29,779	2,600	8.7
Ⅱ. 장기차입부채	34,926	30,832	4,094	13.3
Ⅲ. 장기충당부채	124,998	126,080	△1,082	△0.9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0
순 자 산	10,237,960	9,844,338	393,622	4.0
Ⅰ. 기본순자산	5,685,180	5,685,180	0	0.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063,141	940,277	122,864	13.1
Ⅲ. 순자산 조정	3,489,638	3,218,880	270,758	8.4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2,212억 1,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2,862억 5,700만원, 관리운영비 2조 7,742억 8,000만원, 비배분비용 130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650억 4,300만원, 비배분수익 416억 7,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80억 3,000만원(1.2%) 감소한 3조 9,674억 6,100만원이며, 이는 자산처분이익 등 비배분수익이 3,269억 5,300만원 감소했으나 국가배상금 지급액을 포함한 프로그램순원가가 4,653억 9,3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검찰활동 프로그램 (3,581억 4,000만원)과 교정활동 프로그램(3,366억 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조 2,446억 200만원과 경비 5,302억 1,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39억 6,600만원과 기타비용 91억 2,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221,214	1,686,607	△465,393	△27.6
가. 프로그램 총원가	1,286,257	1,753,368	△467,111	△26.6
나. 프로그램 수익	65,043	66,761	△1,718	△2.6
II. 관리운영비	2,774,280	2,650,598	123,682	4.7
III. 비배분비용	13,098	46,911	△33,813	△72.1
IV. 비배분수익	41,671	368,624	△326,953	△88.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967,461	4,015,491	△48,030	△1.2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967,461	4,015,491	△48,030	△1.2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9조 8,443억 3,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0조 2,379억 6,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936억 2,200만원(4.0%)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 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3조 9,674억 6,100만원이나, 가산 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4조 903억 2,500만원, 조정항목이 2,707억 5,800만원으로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5조 4,979억 4,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4,076억 2,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707억 5,8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법무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9,844,338	9,320,180	524,158	5.6
II. 재정부영결과	3,967,461	4,015,491	△48,030	△1.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090,325	4,451,104	△360,779	△8.1
IV. 조정항목	270,758	88,544	182,214	205.8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0,237,960	9,844,338	393,622	4.0

자료: 법무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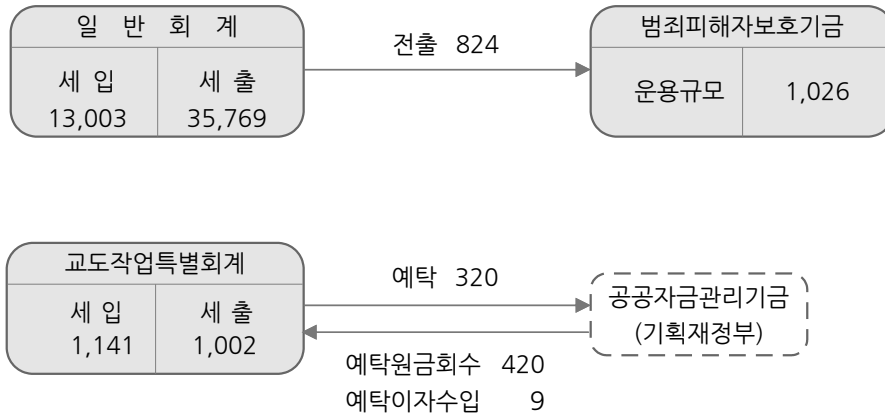
2019회계연도 법무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24억 4,000만원 전출되었다.

한편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공자기금에 320억원을 예탁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420억원, 예탁이자수입 9억원을 받았다.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법무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 ② 법무검찰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사업, ③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사업, ④ 검찰수사지원 사업 등이 있다.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은 한국법학원 보조금 5,000만원이 감액(9억 7,500만원→9억 2,500만원)되었고, 법무검찰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사업은 성평등 교육비 4,300만원이 감액(1억 4,300만원→1억원)되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운영 사업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직 인건비 6,800만원이 감액(18억 6,400만원→17억 9,600만원)되었고, 검찰수사지원 사업은 검찰통합민원콜센터 임차료 4억 5,600만원이 감액(272억 5,000만원→267억 9,4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국가배상금지급 사업, ②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등이 있다.

국가배상금지급 사업은 1,000억원 증액(2,000억원→3,000억원)되었고,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은 105억 600만원이 증액(554억 900만원→659억 1,500만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국유재산관리기금)이 있다.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은 “법무부는 거창 구치소 신축 여부 및 신축예정부지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법무부·경상남도·거창군의회와 찬반 양측이 공정하게 참여한 공론기구에서 정한 조사방식으로 실시한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 구치소 신축사업을 시행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구현, 민생 안정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실현, 인권가치를 우선하는 포용적 법무행정 추진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기금의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한 일부 간접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상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관에게 기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자문료 집행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학회의 학술활동과 연계하여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과다 지급하는 등 자문료가 임의적으로 집행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자문의 성격에 부합되게 자문의뢰를 하고 자문료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여 자문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 개선 필요

가. 현 황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2011년에 신설된 기금으로, 다양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내실 있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인권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19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1,011억 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 및 지출 결산액은 계획액 대비 14억 4,800만원이 증가한 1,025억 5,000만원이다.

[2019회계연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계획액		결산액(B)	증감	
	당초	수정(A)		(B-A)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102	101,102	102,550	1,448	1.4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 기금의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의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부여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책무’ 이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금의 수입을 확대하거나, 기금의 지출사업 중 범죄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한 일부 간접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금의 수입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벌금 수납액의 기금 전입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변상금의 수납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벌금 세입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구상금, 여유자금 회수 등이다¹⁾. 2019년 수입결산 현황을 보면, 총 수입액 1,025억 5,000만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824억 4,000만원으로 80.4%를 차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가 165억 8,500만원으로 16.2%, 구상금이 12억 4,3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2016년 948억 5,600만원에서 2019년 824억 4,000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은 2016년 82억 6,800만원에서 2019년 165억 8,5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은 2019년 4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

[최근 4년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107,549	101,207	95,563	102,550
기타 재산수입 (54-545)	686	520	232	496
변상금 (57-571)	1,014	1,198	1,510	1,243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2,725	2,004	1,431	1,785
한국은행예치금 회수(85-851)	1,386	663	1,281	1,185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2)	6,882	16,712	11,000	15,400
일반회계전입금 (91-911)	94,856	80,110	80,110	82,440

자료: 법무부

[최근 4년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22,810	20,600	14,600	4,700

자료: 법무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2)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기금에 납입한 벌금 수납액으로, 2019년 기준 기금 수입의 80.4%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나, 최근 4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3)’의 영향

2)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3)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으로 벌금 수납액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년간 벌금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벌금 수납액	1,362,766	1,290,208	1,162,450	1,083,496

자료: 법무부

반면에 동 기금의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실제 지출규모는 2016년 904억 4,100만원에서 2019년 962억 8,200만원으로 4년간 58억 4,100만원이나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법무부는 2020년 지출계획액인 1,035억 4,3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00억원을 예수하는 ‘기금예수금’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로서, 향후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으로 기금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⁴⁾.

따라서 동 기금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 수납액의 기금 전입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벌금 수납액의 전입비율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당시(2010.5.14.)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4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동 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100분의 4’로 규정하였다가 2013년 ‘100분의 5’로 상향조정되었다.

그 후 다시 2014년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00분의 4’ 이상의 범위를 ‘100분의 6’ 이상의 범위로 상향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100분의 6’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참고로 벌금 수납액의 전입비율과 관련하여서는 2014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 당시 소수의견으로 벌금의 동 기금 전입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⁵⁾.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2020년 기금운용계획 지출항목에 예수금이자 상환으로 1억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변상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21조제2항⁶⁾에 의하면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⁷⁾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범죄피해 구조금은 402억 3,700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변상금 수납액은 49억 6,500만원(1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 구조금 지급내역 및 변상금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구조금 지급내역(A)	9,257	9,289	10,175	11,516	40,237
변상금 수납내역(B)	1,014	1,198	1,510	1,243	4,965
구조금 지급대비 변상금 수납율(B/A)	10.9	12.9	14.8	10.8	12.4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변상금 수납액이 미미한 것은 기본적으로 구상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호⁸⁾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은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⁹⁾의 심의·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⁹⁾ 이미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제기될 손해배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제안, 2014.7.15.)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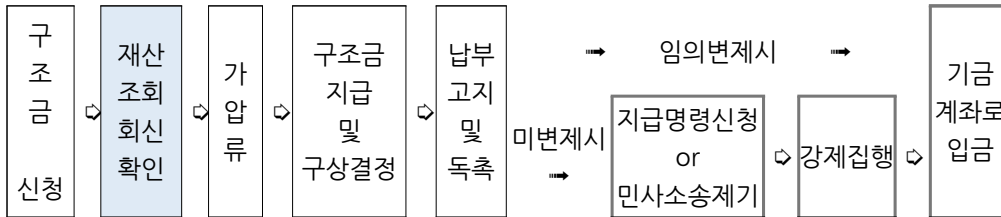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

상청구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은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¹⁰⁾

[구조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



자료: 법무부

한편 현행 구상권 행사 절차를 보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구조금 지급결정 전이라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¹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에 재산이나 소득 조회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나, 관련 기관의 비협조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구조금 신청 시에 즉시 가해자의 재산이나 소득조회를 의뢰하고 확인된 재산이 있는 경우 미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함으로써 변상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범죄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한 일부 간접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에서는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보조금의 교부,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¹²⁾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그

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0) 「구상권 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법무부, 2014 연구용역보고서)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¹³⁾을 기금의 용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주체는 법무부이지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법무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기금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 사업비 중 직접지원 사업비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등 223억 4,400만원(23.2%)에 불과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간접지원 사업비가 739억 3,900만원(76.8%)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은 불과 2.3% 상승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상담, 의료 제공,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4.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5. 「법률구조법」 제2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관련된 조치
 7.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른 형사조정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 1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최근 4년간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비 합계	90,441	85,388	89,326	96,282
간접지원 사업비	71,563	66,390	68,707	73,939
직접지원 사업비	18,878	18,997	20,619	22,344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20.9	22.3	23.1	23.2

자료: 법무부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못지않게 상담, 심리치료, 피해조사 등 지원기관에 의한 간접지원도 중요하지만, 간접지원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 77%를 차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지원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 간접지원 사업비의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금의 수입이 확대되지 않는 한 기금의 지출사업 구조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성격	예산액	집행액	담당부처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간접	3,465	3,465	법무부
	스마일센터 설치·운영비	간접	9,934	9,416	법무부
	범죄피해자치료비지원	직접	3,516	3,396	검찰청
	범죄피해자 자립지원	직접	1,564	1,498	법무부
	강력범죄피해현장정리	직접	409	327	경찰청
	범죄피해자법률구조지원	직접	412	412	법무부
	교육, 연구개발 등	간접	422	345	법무부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지원	형사조정위원수당 등	간접	4,531	4,530	검찰청
범죄피해자 구조금	구조금	직접	11,524	11,516	검찰청
	홍보, 지도점검	간접	138	134	검찰청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장치 구입 및 유지비	직접	311	310	검찰청, 경찰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성격	예산액	집행액	담당부처
등의 신변 보호 강화	이전비 지원	직접	200	156	검찰청
	임시안전숙소 제공	직접	575	575	경찰청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진술조력인 양성, 수당 등	간접	985	981	법무부
성폭력피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간접	24,249	24,153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지원	직접	4,002	3,992	
	보호시설 신규설치	간접	308	308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간접	510	508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 지원단 운영	간접	1,452	1,452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직접	169	162	
	시설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등 지원	간접	16	15	
	성폭력 실태조사	간접	639	624	
피해자 국선 변호인 지원	국선변호인 수당, 운영 등	간접	5,525	5,508	법무부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간접	22,500	22,500	보건복지부
합 계			97,356	96,282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처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경우 피해아동 치료비, 가족심리치료비 등 직접지원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 지원기관의 인건비·운영비 등 간접지원 사업비로 집행되었고 여성가족부도 간접지원 사업비가 86.7%에 달하고 있으며, 법무부·검찰청의 경우도 58.9%가 간접지원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어서 이들 사업 중 범죄피해자와 상대적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부처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법무부·검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집행액	41,416	31,214	22,500	1,153
직접지원 사업비(%)	17,027(41.1)	4,154(13.3)	0	1,153(100)
간접지원 사업비(%)	24,389(58.9)	27,060(86.7)	22,500(100)	0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참고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생긴 이래 동 기금에서 타 기금이나 일반 회계 등으로 이관된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 등 총 5개 사업(약 205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제20대국회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용도에서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제3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여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등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다.¹⁴⁾

1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4.28.)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이관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당초			변동			이관 시기	재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계획액	세부사업	내역사업	계획액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 지원		1,594	가정폭력· 성폭력무료 법률지원 ¹⁵⁾		1,594	2014	여성발전기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2,20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¹⁶⁾		12,203	2014	여성발전기금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3,59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3,590	2017	양성평등기금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	1,452	한국여성 인권진흥원 지원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	1,452	2020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앙아동 보호전문 기관 운영	1,592	아동권리 보장원 운영지원	중앙아동 보호전문 기관 운영	1,592	202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현재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 하에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우므로, 법무부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확대하고 변상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는 등 기금의 수입을 확대하거나, 일부 간접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15) 동 사업은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변경되었다.

16) 동 사업은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가. 현 황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관리 사업¹⁾, 소년원생 수용 사업²⁾,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사업³⁾,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사업⁴⁾에 의무관 임상연구비(260-01목)를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2019년 4개 사업의 임상연구비 예산현액 12억 300만원 중 9억 9,700만원(82.9%)을 집행하고 2억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임상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외국인 보호관리	27	27	0	0	27	27	100	0	0
소년원생 수용	119	119	0	13	132	132	100	0	0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137	137	0	△13	124	87	70.2	0	37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920	920	0	0	920	751	81.6	0	170
합 계	1,203	1,203	0	0	1,203	997	82.9	0	207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관에게 기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최종결과보고서의 충실도 제고를 위하여 평가등급에 따른 연구비 지급 편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연구비 집행지침 시행에 필요한 통일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233-300

2) 코드: 일반회계 1632-300

3) 코드: 일반회계 1634-300

4) 코드: 일반회계 7018-256

의무관 임상연구비는 법무부훈령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무직 공무원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9년도에 외국인 보호관리 등 총 4개 사업에 임상연구비를 편성·집행하였는데, 동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관에게 기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에 임상연구와 관련한 연구계획서 등의 제출현황을 보면 연구계획서 제출 후 의원면직, 퇴직 등으로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이 8명이며, 중간보고서 제출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관이 4명으로, 총 12명의 의무관이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9년도 세부사업별 임상연구보고서 제출현황]

(단위: 명)

세부 사업명	연구 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비 고
	인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외국인 보호관리	3	3	0	3	0	
소년원생 수용	15	14	△1	13	△2	면직 1명(연구계획서 제출후) 퇴직 1명(중간보고서 제출후)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8	7	△1	7	△1	면직 1명(연구계획서 제출후)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93	87	△6	84	△9	면직 3명, 퇴직 3명 (연구계획서 제출후) 면직 2명, 전출 1명 (중간보고서 제출후)
합 계	119	111	△8	107	△12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18년도에도 연구계획서 제출 후 의원면직으로 4명이 중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중간보고서 제출 후 의원면직 등으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이 6명,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 제출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이 2명 등 총 12명의 의무관이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8년도 세부사업별 임상연구보고서 제출현황]

(단위: 명)

세부 사업명	연구 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비 고
	인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외국인 보호관리	3	3	0	3	0	
소년원생 수용	13	13	0	12	△1	면직 2명(중간보고서 제출후) (1명은 최종보고서 제출, 재직기간 일할 계산하여 최종보고서 연구비 지급)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12	11	△1	9	△3	면직 1명(연구계획서 제출후) 면직 2명(중간보고서 제출후)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92	89	△3	84	△8	면직 3명(연구계획서 제출후) 면직 3명(중간보고서 제출후) 최종보고서 미제출 2명 (중간보고서 제출후)
합계	120	116	△4	108	△12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해서는 법무부훈령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과 동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각 소속기관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연구계획서 승인 시와 중간보고서 심사 후에 평가등급 ‘우수’에 해당하는 연구비(9,120,000원)의 25%(2,280,000원)를 각각 지급하고, 12월에 최종결과보고서의 평가등급에 따라 나머지 연구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및 2019년에 중간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4명의 의무관에게 기 지급된 임상연구비는 약 7,100만원에 달한다.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미제출한 의무관에 기 지급된 임상연구비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세부사업	연구계획서	제출 후	중간보고서	제출 후
		중간보고서 미제출	기 지급액	최종결과보고 서 미제출	기 지급액
2018	소년원생 수용	0	0	1	4,560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	2,280	2	9,120
	교도소운영기본경비	3	6,840	5	14,161
	소 계	4	9,120	8	27,841
2019	소년원생 수용	1	2,280	1	4,560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	2,280	0	0
	교도소운영기본경비	6	13,410	3	11,856
	소 계	8	17,970	4	16,416
합 계		12	27,090	12	44,257

자료: 법무부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9조5)에 따르면 기관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수행을 포기하거나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연구계획서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관에 대해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더욱이 2018년 교도소운영기본경비 사업에서는 의원면직이나 퇴직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관 2명(인천구치소 1명, 군산교

5)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9조(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치) ① 기관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하거나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한 경우
4.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도소 1명)에 대해서조차 기 지급한 임상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천구치소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미 제출한 의무관에 대해 일정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기는커녕 2019년에도 동일 주제로 연구계획서를 승인하고 최종결과보고서에 ‘탁월’ 등급을 부여하여 9,348,000원을 지급하였다.

[동일 연구주제로 연구계획서를 재승인한 사례]

연도	세부사업	연구자소속	연구주제	비 고
2018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인천 구치소	인천구치소 여성 수용자들의 외부 진료 현황 고찰	연구계획서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 미 제출
2019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인천 구치소	인천구치소 여성 수용자들의 외부 진료 현황고찰	연구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치료감호소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르면 연구계획을 승인받
은 의무관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연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진행률에 상응
하는 연구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1쪽 분량의 연구계획서나 1~7쪽 분량의 중
간보고서를 연구 진행률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평가 없이 기 지급한 연구
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치료감호소 임상연구평가위원회의 중간보고서 평가의
견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간보고서의 완성도가 매우 미흡하여 평가 자체에 어려움이
많았고, 향후 연구 진행의 방향 및 결과 예측이 곤란한 수준이므로 연구진행 속도
를 제고하여 최종결과 보고기한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다.

**둘째, 임상연구 최종결과보고서의 충실도 제고를 위하여 현행 평가등급에 따른
연구비 지급편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르면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연구결과보고서
의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

고 동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소속기관별 세부규정에서는 평가등급에 따른 연구비 지급률을 탁월(110%), 우수(100%), 보통(90%)으로 하고,⁶⁾ 연구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제출 후 평가등급 ‘우수’에 해당하는 연구비의 25%를 각각 지급하고 기 지급한 연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외국인 보호관리 사업의 임상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등급별 지급액을 보면, ‘미흡’을 받은 임상연구보고서의 경우 임상연구라기보다는 단순 문헌 고찰에 불과하며 최종결과보고서의 분량도 겨우 8쪽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 ‘우수’를 받은 연구보고서와의 지급액의 편차가 456,000원에 불과하다.

[2019년 외국인 보호관리 사업 임상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 현황]

(단위: 매수, 천원)

연구자 소속	연구주제	최종결과 보고서	평가등급	지급액
화성 보호소	보호외국인의 고혈압 치료 시 목표 혈압치에 대한 문헌 고찰	8	미흡	8,892
청주 보호소	의무관 비상주 보호시설의 상비의약품 표준화방안 연구	14	보통	9,120
여수 사무소	보호외국인 환자 승객의 항공여행 및 항공후송 시 고려할 국제기준과 시사점	48	우수	9,348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임상연구가 그 연구결과를 관련분야 소속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자 등의 의료처우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종결과보고서의 충실도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찰병원과 같이 임상연구 논문의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등급에 따른 지급액의 편차를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20% 이상 두도록 하되, 최하위등급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비 지급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6)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는 평가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부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기관 임상연구비와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등급별 연구비 편차]

구 분	법무부 교정기관 임상연구비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등급	탁월, 우수, 보통	S, A, B, 기타등급
등급별 연구비 편차	우수 등급을 평균으로 각각 10%의 차이를 두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5% 범위 안에서 지급금액 증감 가능	S등급 : 10,000천원 이하 A등급 : 당해연도 S등급의 80% 이상 B등급 : 당해연도 S등급의 60% 이상 기타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정함

자료: 법무부,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셋째, 법무부 소속기관별로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통일된 세부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정기관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치료감호소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등 소속기관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속기관별 세부규정을 보면, 그 구체적 내용이 달라서 임상연구비를 집행할 때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정기관의 경우 평가등급별 연구비는 ‘우수’ 등급을 평균으로 각각 10%의 차이를 두도록 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5%의 범위 안에서 지급금액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보호소 등도 평가등급별 연구비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10%의 편차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은 각 등급별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교정기관은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연구계획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비 지급일에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은 연구진행률에 상응하는 연구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원 등은 7월 이후에 임용된 연구관이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연구비의 60% 이내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구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라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이 다를 경우, 의무관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며, 집행 관리에도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임상연구비 집행지침 시행에 필요한 통일된 세부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소속기관별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비교]

구 분	교정기관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연구계획서 제출	2월 10일	2월 말	2월 말	2월 말
연구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 6월 10일 최종보고서 10월 31일	중간보고서 6월 말 최종보고서 11월 15일	중간보고서 6월 말 최종보고서 11월 15일	중간보고서 5월말 최종보고서 10월말
평가등급별 연구비	탁월(110%), 우수 (80%), 보통(10%)로 하고, ‘우수’ 등급을 평균으로 각각 10%의 차이를 두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5%의 범위안에서 증감 가능 최종보고서 평가 등급에 따라 연구비의 6/12를 차등 지급	탁월(110%), 우수 (100%), 보통 (90%)으로 하고, 기 지급 연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6/12)을 차등 지급	탁월(110%), 우수 (100%),보통 (90%)으로 하고, 최종평가후 평가 등급에 따른 연구비 지급률에 따라 나머지 연구비(6/12)를 12월 중 차등 지급	우수(1명), 보통 (1명), 미흡(1명) 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되, 평가 등급별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10% 편차 최종보고서를 평가한 후 평가 등급에 따라 연구비의 6/12를 차등 지급
연구비의 지급시기 등	당해연도 6월 30일 까지 임용된 의무관이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한 경우 임용 2개월 후에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이후 임용된 의무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당해연도 6월 이전에 임용된 의무관이 임상연구 계획서 등을 제출한 경우 임용 2개월 후에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7월 이후에 임용된 의무관이 최종보고서를	당해연도 6월 이전에 임용된 의무관이 연구 계획서, 중간 보고서를 6월말 까지 제출한 경우 연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7월 이후에 임용된 연구관이	당해연도 6월 이전에 임용된 의무관이 연구 계획서 등을 제출한 경우, 임용 2개월 후에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7월 이후에 임용된 의무관이

구 분	교정기관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u>결정으로 연구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u>	<u>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u>	<u>연구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수에 해당하는 연구비의 60%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u>	<u>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연구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u>
	<u>지급대상 신청자가 연구계획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비 지급일에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근무 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	<u>연구계획을 승인 받은 의무관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연구결과 평가시 까지 연구를 종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진행률에 상응하는 연구비만 지급</u>	<u>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의무관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연구결과 평가시 까지 연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 진행률에 상응 하는 연구비만 지급</u>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법무부 소속기관인 검찰청 소관 예산은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되어 있는데, 검찰청운영 인건비¹⁾와 기본경비²⁾는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비는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다.

동 인건비, 기본경비, 검찰활동 프로그램 예산액은 1조 727억 7,000만원으로 법무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7,963억 8,100만원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1조 754억 4,400만원 중 1조 696억 7,800만원이 집행되고 9억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8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검찰청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검찰활동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주요사업비 (검찰활동 프로그램)	306,608	306,608	1,860	5,883	314,351	310,691	98.8	924	2,735
인건비	723,262	723,262	0	△3,145	720,117	718,645	99.8	0	1,472
기본경비	42,900	42,900	0	△1,924	40,976	40,342	98.5	0	634
합 계	1,072,770	1,072,770	1,860	814	1,075,444	1,069,678	99.4	924	4,841

자료: 법무부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02-101

2) 코드: 일반회계 7018-202, 7018-252

나. 분석의견

검찰청의 경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검찰청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법무부 및 검찰청 소관 예산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의 경우 검찰활동 프로그램 아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동 프로그램은 6개 단위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9개의 세부사업 중 박영수 특별검사, 허익범 특별검사 사업을 제외한 17개 세부사업에는 법무부가 전액 집행하는 사업과 검찰청이 전액 집행하는 사업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청이 예산을 나누어 집행하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다.

2019년도를 보면, 형사법정비 사업은 법무부가 전액 집행하였으며, 검찰청시설 운영 사업,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성범죄등 사회적약자대상 범죄단속 사업, 형사보상 사업 등 4개 사업은 검찰청이 전액 집행하였다. 그리고 12개 세부사업은 법무부 소관 예산과 검찰청 소관 예산이 혼재되어 편성·집행되고 있다.

[검찰활동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집행주체 현황]

구 분	법무부(1개 사업)	검찰청(4개 사업)	법무부·검찰청 (12개 사업)
검찰활동 프로그램 (박영수 특별검사, 허익범 특별검사 사업 제외)	- 형사법정비	- 검찰청시설운영 - 검찰업무정보화 - 성범죄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단속 - 형사보상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정보화) - 검찰수사지원 - 수사일반 - 공안수사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 마약수사

구 분	법무부(1개 사업)	검찰청(4개 사업)	법무부·검찰청 (12개 사업)
			- 민관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단속 - 공소유지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검찰활동 프로그램에서 검찰청이 실제 집행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도 검찰청 소관 예산액은 1조 630억 200만원으로 법무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 3조 7,963억 8,100만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1조 655억 5,300만원 중 1조 600억 100만원이 집행되고 9억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6억 2,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회계연도 검찰청 소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주요 사업비	296,840	296,840	1,840	5,780	304,460	301,014	98.9	924	2,522
인건비	723,262	723,262	0	△3,145	720,117	718,645	99.8	0	1,472
기본경비	42,900	42,900	0	△1,924	40,976	40,342	98.5	0	634
합 계	1,063,002	1,063,002	1,840	711	1,065,553	1,060,001	99.2	924	4,628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집행하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청 소관 예산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며,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등 성과주의 예산의 정착을 통해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려는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검찰청 소관의 19개 세부사업 중 15개 세부사업에서 예산의 이·전용등이 발생하는 등 소요예산의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9년에 검찰청 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19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검찰 청시설운영 사업 등 15개 세부사업에서 이·전용등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4년간 매 년 이·전용등이 발생한 사업도 11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2019회계연도 검찰청 소관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검찰청시설운영	검찰청	65,695	1,364	1,229	0	67,676	404	207
검찰국외훈련 및	법무부	5,947	20	247	0	6,210	0	4
국제형사협력지원	검찰청	466	0	0	0	466	0	0
과학수사인프라	법무부	129	0	0	0	127	0	2
구축	검찰청	6,776	0	△315	0	6,456	0	5
국제형사협력	법무부	453	0	0	0	335	0	117
지원(ODA)	검찰청	290	0	0	0	290	0	0
검찰업무정보화 (정보화)	검찰청	30,585	0	0	814	30,093	430	876
첨단범죄 및	법무부	58	0	0	0	57	0	1
디지털수사 (정보화)	검찰청	12,381	0	0	0	11,699	0	682
검찰수사지원	법무부	1,071	0	0	0	1,063	0	8
	검찰청	25,723	476	△366	0	25,628	50	155
수사일반	법무부	829	0	0	0	829	0	0
	검찰청	85,230	0	△1,005	0	83,766	40	419
공안수사	법무부	129	0	0	0	129	0	0
	검찰청	5,135	0	△458	0	4,611	0	66
국민생활침해	법무부	54	0	0	0	49	0	5
사범단속	검찰청	13,137	0	△163	0	12,907	0	67
마약수사	법무부	141	0	0	0	140	0	1
	검찰청	4,333	0	△105	0	4,218	0	10
성범죄 등 사회적약자대상 범죄단속	검찰청	3,306	0	△2	0	3,303	0	1
민관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단속	법무부	174	0	0	0	140	0	34
	검찰청	7,567	0	△16	0	7,520	0	32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9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공소유지	법무부	59	0	0	0	59	0	0
	검찰청	1,808	0	△757	0	1,050	0	1
형집행및범죄 수익환수	법무부	286	0	0	0	250	0	36
	검찰청	1,195	0	0	0	1,194	0	1
형사보상	검찰청	33,213	0	6,926	0	40,138	0	0
검찰청운영 인건비(총액)	검찰청	723,262	0	△3,145	0	718,645	0	1,472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검찰청	32,183	0	△1,714	0	29,914	0	555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검찰청	10,717	0	△210	0	10,428	0	79

자료: 법무부

[최근 4년간 매년 이·전용등이 발생한 사업 현황]

세부사업명(11개)
검찰청시설운영, 과학수사인프라구축, 검찰수사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 사범단속, 성범죄등 사회적악자대상범죄단속, 민관유착비리등 사회공정성저해사범단속, 형사보상,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물론 이·전용 제도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는 하나, 연례적으로 특정사업에서 이·전용등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집행주체인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가 검찰청 소관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2항). 그리고 「국가재정법」에서는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라고 하고(제6조제2항), “세입세출 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제2항).

또한 「국가재정법」 제3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찰청은 중앙관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 검찰국장 분장 사무로 규정하고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17개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통합 편성한 기관은 검찰청이 유일하며, 검찰청 소관 예산의 독립 편성 문제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국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의결 시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다.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관련 연도별 국회의결 사항]

구 분	유형	주요내용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제도개선)	법무부는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문제를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2011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정부는 2010회계연도 결산시 제도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참구하여 보고한다
	시정요구 (제도개선)	법무부는 이후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제도개선)	법무부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개선할 것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추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히 검찰청 소관 예산의 독립편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필요

가. 현 황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¹⁾은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를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과를 세계은행과 각국에 알려 기업환경지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는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3억 600만원 중 3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업환경 지수 개선	298	298	8	0	306	303	0	2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기업환경지수 평가부문 중 자금조달과 소수투자자 보호, 도산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은 2003년부터 매해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여 이를 “Doing Business Re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생애주기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기까지 10개의 영역²⁾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2-307

우리나라는 Doing Business Report가 처음으로 발간된 2003년부터 평가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 10월에 발표된 2020년 종합순위에서는 5위를 기록하였다.³⁾

한편,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의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먼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지수가 발표된 후 평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주요 개선분야 및 협력대상국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협력대상국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고 협력대상국의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의 및 현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세계은행 평가에 미 반영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실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주요 개선분야를 보면 자금조달 영역은 2016년부터, 소수투자자 보호 및 도산 영역은 2017년부터 주요 개선분야로 선정되어 해당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협력대상국의 법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부문에서의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 주요 개선분야 및 협력대상국 현황]

연도	주요 개선분야(협력대상국)
2016	계약분쟁 해결절차(말레이시아), <u>자금조달(싱가폴)</u>
2017	계약분쟁 해결절차(베트남), <u>자금조달(호주)</u> 소수투자자 보호(캐나다), 도산(영국, 일본)
2018	계약분쟁 해결절차(러시아), <u>자금조달(영국, 러시아)</u> 소수투자자 보호(노르웨이), 도산(일본)
2019	계약분쟁 해결절차(미국), <u>자금조달(미국, 조지아)</u> 소수투자자 보호(조지아), 도산(독일)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도산 부문은 2016년 4위에서 2020년 11위로 7단계 하락하였으며, 소수투자자 보호는 2016년 8위에서 2020년 25위로 17단계, 자금조달 부문은 2016년 42위에서 2020년 67위로 무려 25단계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①창업, ②건축인허가, ③전기 공급, ④재산권 등록, ⑤자금조달, ⑥소수투자자 보호, ⑦세금 납부, ⑧통관 행정, ⑨계약분쟁 해결절차, ⑩도산

3) 세계은행은 평가대상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평가대상 연도의 Doing Business Report를 발표해 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요 개선분야 순위변동 현황]

(단위: 순위)

평가부문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금조달	42	44	55	60	67
소수투자자 보호	8	13	20	23	25
계약분쟁 해결절차	2	1	1	2	2
도산	4	4	5	11	11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세계은행의 순위 평가는 상대평가로, 주변국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순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며, 특히 소수투자자 보호 부문의 경우 2018년 평가 시 우리나라의 점수가 상승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순위는 하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별 영역을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각국이 해당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적합한 법률 혹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물론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하여 단기간에 현행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매년 주요개선 분야로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 영역에서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제·개정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¹⁾은 국민의 편익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해설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0억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041	1,041	0	△1	1,040	1,040	100.0	0	0
일반수용비	579	579	0	14	592	592	100.0	0	0
임차료	69	69	0	△14	55	55	100.0	0	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자문료 및 임차료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자문료 지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학회의 학술활동과 연계하여 자문의뢰를 하고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 마련된 자문료 지급기준은 단순히 매수를 기준으로 자문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문료 책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 향후, 법무부는 자문의 성격에 부합되게 자문의뢰를 하고 자문료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여 자문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3-300

동 사업에는 법령개정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전문적 사항을 자문 의뢰한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에 ‘법령개정 수당 및 자문료’가 편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2019년도 법령개정 관련 수당 및 자문료 예산액 1억 6,560만원 중 7,295만원(44%)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자문료로 5,885만원이 집행되었다.

[2019회계연도 법령개정 관련 수당 및 자문료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수당	165,600	14,100
자문료		58,850
합 계	165,600	72,950

자료: 법무부

그런데, 자문료 지급 건을 살펴보면, 총 20건 중 8건은 개인이 아닌 학회에 자문의뢰를 하였으며,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에 자문의뢰를 한 주제들은 2019년도 해당 학회의 학술대회 주제와 일치하고 있어 학회에 대한 지원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학회에 자문의뢰를 하고 자문료를 집행한 건]

(단위: 매, 천원)

자문수행자	자문 주제	분량	자문료
한국민사법학회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21	2,000
	우리 민법과 사적자치	19	2,000
	사적자치와 상가권리금 보호 관련	21	2,000
	주택임대차 목적물의 주거적합성과 최저주거기준	58	2,000
	통일시대 대비한 민법학 관련 자문 (세부주제 4건)	91	10,000
한국비교사법학회	자율주행에 대한 사법적 대응 관련 자문 (세부주제 3건)	64	7,500

(단위: 매, 천원)

자문수행자	자문 주제	분량	자문료
한불민사법학회	프랑스가족법 관련 자문(세부주제 2건)	87	5,000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의 최근 쟁점 및 향후 과제 관련 자문 (세부주제 4건)	92	10,000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동 사업을 주관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민사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향후 민사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학계의 연구 활동이 주로 학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학회의 학술활동과 연계하여 자문을 의뢰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문이란 어떤 사안을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고자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임을 감안할 때, 민사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자문’이라는 형식으로 학회에 자문의뢰를 하고 자문료를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법무부는 자문료 지급에 관한 기준도 없이 자문의 난이도나 분량이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건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세부주제 4건)까지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2020년 4월에 와서야 「법령 제·개정 자문료 등 지급기준」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동 지급기준에 의하면 자문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문료 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데²⁾, 2019년에 1,000만원을 초과한 자문이 한 건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문보고서의 매수별로 자문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50매를 초과할 경우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글자크기 등 자문보고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도 정하고 있지 않다.

2) 「법령 제·개정 자문료 등 지급 기준」 제3조(자문료) ② 법무심의관실은 제1항에 따라 자문수행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령 제·개정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문수행자와 상호 협의 하에 적정금액을 산정한다.
2. 자문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무심의관, 검사 또는 서기관, 법령담당자 등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는 자문료 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자문료는 자문 보고서의 매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그러나 자문 내용의 중요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자문보고서의 매수별 지급기준]

매수	지급액
10매 이하	200,000원
10매 초과 15매 이하	500,000원
15매 초과 30매 이하	1,000,000원
30매 초과 50매 이하	5,000,000원
50매 초과 100매 이하	10,000,000원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법령개정 관련 자문의 경우 자문의 내용 및 난이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자문료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인정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등의 경우 물론 매월 사례금이 지급되는 고문변호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하나, 자문보고서의 매수와 무관하게 서면자문을 토대로 한 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³⁾ 단순히 매수별로 자문료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법무부는 자문의 성격에 부합되게 자문의뢰를 하고, 자문료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자문료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무부는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J빌딩)을 연중 대관하여 2019년 한해에만 약 5,500만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집행하였는데, 임차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등에 관한 규정」

제6조(사례금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사례금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55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수당 외에 1건당 1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사례금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이나 소송에 관한 답변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5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19년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 예산액에 ‘법령 개정 관련 회의장 임차료’로 5,544만원을 편성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J빌딩 회의장을 연중 상시 대관하여 매월 462만원씩 전액을 집행하였다.

법무부가 서울 서초구에 회의장을 처음 임차한 연도는 2014년으로, 최근 4년간 집행한 임차료만 2억 4,864만원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장 소	임차료	계약기간
2016	서초동 오피런스	월 574만원*12	2016.4.10~2017.4.9
2017	서초동 오피런스	월 574만원*12	2017.4.10~2018.4.9
2018	서초동 J빌딩 ⁴⁾	월 462만원*12	2018.4.10~2019.4.9
2019	서초동 J빌딩	월 462만원*12	2019.4.10~2020.4.9
합 계		248,640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무부는 동 건물의 임차 필요성에 대하여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다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관계기관과의 견조율을 위한 각종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장소가 필요하며, 외부 회의장을 수시로 대관할 경우 1회 대관비용이 장기임차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2019년 J빌딩에서 열린 회의 개최내역을 살펴보면, 동 사업의 주관부서인 법무심의관실에서 사용한 횟수는 8회에 불과하며, 오히려 통일법무과가 1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법무부는 임차료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2018. 4. 9 임차료가 보다 저렴한 J빌딩의 회의장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외부 회의장 사용 현황]

구 분		회의장 사용횟수
기획조정실		1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8
	법무과	2
	국제법무과	4
	통일법무과	18
	법조인력과	7
인권국	인권구조과	9
	여성아동인권과	13
	인권정책자문단회의	2
범죄예방정책국		1
합 계		65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무부는 법무심의관실의 서초동 소재 회의장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법무심의관실 소관법령 대부분이 제정 및 개정 절차 진행상 입법준비 단계를 위한 외부전문가 회의 진행을 마치고 국회에 제출하였기에 일시적으로 회의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여러 용도로 회의장을 사용하도록 적극 독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법무심의관실의 서초동 소재 회의장 사용횟수를 보면 2016년 87회에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몇 번의 회의를 위해서 외부 회의장을 매년 임차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최근 4년간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 사용 현황]

구 분	총 사용횟수	법무심의관실 사용횟수
2016	104	87
2017	68	40
2018	64	31
2019	65	8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서울 소재 법무부 소속기관 회의실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외부 회의장의 임차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소재 법무부 소속기관 회의실 현황]

기관명	주소	회의실 현황(개)(수용인원: 명)
인천공항출입국 서울역출장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	소회의실 1(10)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대회의실 1(40), 소회의실 1(15)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소회의실 1(14)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	소회의실 1(1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대회의실 1(50), 소회의실 1(15)
대검찰청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 본 관(15층): 대회의실 1(320) 중회의실 1(180), 소회의실 1(140) - 별 관(4층) 예그리나홀 1(316) - NDFC(2층) 베리타스홀 1(140)
서울고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대회의실 1(100), 중회의실 1(25), 소회의실 2(각 20)
서울동부지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0	대회의실 1(100), 중회의실 1(21), 부회의실 10(각 15), 화상회의실 1(10)
서울남부지검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신정1동 313-1)	대회의실 1(200), 소회의실 1(32), 세미나실 1(23)
서울북부지검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대회의실 1(326), 중회의실 1(30), 소회의실 1(18)
서울서부지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대회의실 1(200), 중회의실 1(20)
서울동부(구)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대회의실 1(72), 소회의실 2(25, 7)
서울남부(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오로 865	대회의실 1(117), 소회의실 1(17)
서울남부(교)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	대회의실 1(50), 소회의실 1(17)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5-3	회의실 1(16)
서울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대회의실 1(50), 소회의실 1(24)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대회의실 1(40)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93	소회의실 1(20)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 강북구 덕릉로 78	대회의실 1(30)

자료: 법무부

가. 현 황

인권국 기본경비 사업¹⁾은 인권국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인권국 기본경비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1억 4,700만원 중 9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인권국 기본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권국 기본경비 (총액)	158	158	0	7	165	117	0	48
인권국 기본경비	982	982	0	0	982	833	0	149
합 계	1,140	1,140	0	7	1,147	950	0	197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인권국 기본경비에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본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적정 소요예산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별도 편성하거나 인권국 기본경비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동 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관받은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011-208, 7011-263

그런데,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인권국 기본경비에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치료감호소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연수원과 치료감호소는 별도로 기본경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 기본경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무연수원과 치료감호소와는 달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 인력(약 10여명)과 예산 규모(약 2.5억원)를 고려할 때 별도로 기본경비를 편성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국 기본경비 중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 각목명세서상 2019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특근매식비 등 일부 비목은 인권국과 구분하여 편성되어 있으나, 특정업무경비, 자산취득비의 경우 인권국과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권국 기본경비 중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비목	각목명세서상 예산편성 내역	예산액
인권국 기본경비 (7011-208)	특근매식비 (210-05목)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특근자 매식비	10,000
	기타운영비 (210-16목)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부서운영비 (180,000원*12월)	2,160
인권국 기본경비 (7011-263)	일반수용비 (210-01목)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용품 구입비, 수수료 등	30,762
	공공요금및제세 (210-02목)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화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	6,000
	국내여비 (220-01목)	북한인권 기록보존 및 관리	5,000
	관서업무추진비 (240-02목)	북한인권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3,844
	특정업무경비 (250-03목)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활동비	19,000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활동비	11,700
	자산취득비 (430-01목)	기록보관용 캐비넷, 프린트 및 소모물품 구매 노후물품 교체비 등	19,272 27,945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더욱이, 최근 2년간 법무부가 제출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의 경우 2018년에는 1,500만원이 배정되어 그 중 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2019년에는 400만원만 배정되어 전액 집행되는 등 편의적으로 예산이 배정 및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는 인권국 기본경비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본경비로 총 5,000만원이 배정되어 4,000만원(80%)이 집행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6,400만원이 배정되어 4,500만원(69%)이 집행되는 등 인권국 기본경비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본경비를 통합 편성함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본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적정 소요예산의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투명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

[최근 2년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인권국 기본경비(7011-208)	12	9	12	10
특근매식비	10	7	10	8
기타운영비	2	2	2	2
인권국 기본경비(7011-263)	38	31	52	35
일반수용비	12	11	31	18
공공요금 및 제세	6	2	6	6
국내여비	0	0	5	3
관서업무추진비	3	2	5	4
특정업무경비	2	2	2	0
자산취득비	15	14	4	4
합 계	50	40	64	45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법무부는 인권국 기본경비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본경비 통합편성에 따른 편의적 예산집행과 투명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권국 기본경비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본경비를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거나, 인권국 기본경비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본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법무부는 검찰활동 프로그램¹⁾ 아래 9개 세부사업에 기타운영비(210-16목)를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2019년 9개 세부사업의 기타운영비 예산현액 10억 9,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9회계연도 검찰활동 프로그램 기타운영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검찰업무정보화 (정보화)	5	5	0	0	5	5	100.0	0	0
검찰수사지원	93	93	0	4	97	97	100.0	0	0
수사일반	575	575	0	1	576	576	100.0	0	0
공안수사	32	32	0	0	32	32	100.0	0	0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97	97	0	0	97	97	100.0	0	0
마약수사	20	20	0	0	20	20	100.0	0	0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단속	16	16	0	0	16	16	100.0	0	0
민관유착비리등 사회 공정성저해사범단속	208	208	0	0	208	208	100.0	0	0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48	48	0	0	48	48	100.0	0	0
합 계	1,094	1,094	0	5	1,099	1,099	100.0	0	0

자료: 법무부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300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직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각종 수사반 등 보조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기타운영비를 편성·집행하고 있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타운영비(210-16목)은 과운영비, 비서실운영비, 시험에 소요되는 출제수당 및 면접수당 등 시험관리비, 축·조의금 및 격려금 지급을 위한 경비이다. 법무부는 검찰활동 프로그램 아래 9개 세부사업에 기타운영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검찰업무정보화 및 검찰수사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00관련 운영경비’ 등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구체적인 용도의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검찰활동 프로그램 세부사업의 기타운영비 편성내역]

사업명	편성내역	편성액
검찰업무정보화	정보지식인대회수상자 격려	5,200,000원
검찰수사지원	1. 검찰사무직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면접수당	3,960,000원*11회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선발 면접위원 수당	19,800,000원
	가. 실무기록평가 면접위원	200,000원*3인*4조
	나. 직무역량평가 면접위원	200,000원*3인*8조
	다. 발표, 표현역량평가 면접위원	200,000원*3인*8조
	라. 토론, 설득역량평가 면접위원	200,000원*3인*5조
	마. 조직역량평가 면접위원	200,000원*4인*3조*2일
수사일반	3. 시험관리 운영비	30,000,000원
	가. 사무관 승진시험 출제위원 수당 등	
	1. 디지털포렌식수사 관련 기타수사팀 운영경비 등	910,000원*12월
	2. 24시간 수사상황실 운영경비	59개청*90,000원*12월
공안수사	3. 고검 지휘감독 활동경비	20,000,000원
	4. 수사일반 활동 지원	480,000,000원
	1. 선거사범수사 관련 기타 수사반 운영경비	32,000,000원
	1. 중권범죄합동수사 관련 기타 수사단 운영경비	12,000,000원
국민생활침해 사범단속	2. 신종서민생활침해사범단속반 운영경비	36,000,000원
	3. 개인정보범죄 수사반 운영경비	12,000,000원
	4. 공공거래질서 저해사범단속 관련 기타운영비	20,000,000원
	5. 특허범죄 증점검찰청 운영 관련 기타운영경비	5,000,000원
	6. 부정식품사범단속 관련 기타단속반 운영경비	12,000,000원
마약수사	마약수사반 기타운영경비	20,000,000원
성범죄 등	성범죄수사관련 기타수사반 운영경비	12,000,000원

사업명	편성내역	편성액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단속	아동학대범죄 대응 관련 기타운영경비	4,000,000원
민관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 저해사범단속	회계분석, 자금추적 수사관련	1,000,000원*12월
	안전사고 수사	36,000,000원
	민관유착비리 수사	60,000,000원
	세무자료상 수사	50,000,000원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방산비리수사	50,000,000원
	1. 범죄수익추적, 환수 수사관련 기타수사팀 2. 고액 벌금, 추징금 추적팀 운영경비 등	24,000,000원 24,000,000원

자료: 법무부

또한 그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법무부는 해당 수사팀 등에 운영비로 매월 9만원에서 27만원을 지급하고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용도로 집행하였다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직제에 반영된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과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과 운영비를 매월 정액 지급할 경우 과 인원수에 따른 지급단가를 정하고 있다. 또한 격려금의 경우에도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인 지급 및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과운영비 지급단가]

과 인원수	20인 이상	6인 이상	5인 이하
월지급액	270천원	180천원	90천원

그러나,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보조기관인 수사팀 등은 그 인원수를 알기 어려우며, 격려금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동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수사일반 사업의 ①디지털포렌식 수사 관련 기타수사팀 운영경비는 대검 및 12개 디지털포렌식 거점청²⁾의 운영비이며, ②24시간 수사상황

2)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고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대전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부산고검, 창원지검

실 운영경비는 59개 일선 검찰청 상황실 운영비이고, ③고검 지휘감독 활동경비는 6개 고검장 지휘감독 활동비이며, ④수사일반 활동 지원은 과거 특수활동비가 기타 운영비로 전환된 것으로서 전국 66개 검찰청의 운영비 및 격려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법무부는 공안수사 등 그 밖의 사업의 기타운영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대 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구성된 수사단속반의 운영경비로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범죄예방이나 수사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검찰활동의 특성상 수사단속반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현황을 밝히기 어려운 점은 일정부분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하여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기타운영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의 계상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운영비를 ‘00관련 운영경비’로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기타운영비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현금성 경비로서 다른 비목에 비하여 집행 투명성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00관련 운영경비’로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검찰활동 프로그램 사업의 기타운영비의 편성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형사보상 사업¹⁾은 법원의 무죄 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²⁾은 전국 교정기관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물이용 부담금 등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는 형사보상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401억 3,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2,283억 4,100만원 중 2,283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형사보상 및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형사보상	33,213	33,213	0	6,926	40,139	40,139	0	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05,740	205,740	0	22,601	228,341	228,319	0	22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형사보상금과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액을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 등을 통하여 증액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실 집행액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3-302

2) 코드: 일반회계 1532-300

최근 4년간 형사보상금 집행 현황을 보면, 형사보상금 집행 소요액이 당초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예비비 배정과 다른 사업예산에서 이·전용하여 그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평균 122%로 달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2016년 317억 6,900만원에서 2019년 401억 3,900만원으로 83억 7,000만원이나 증가하였다.

[최근 4년간 형사보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2016	25,000	940	5,829	31,769	31,769	127.1
2017	27,500	2,297	6,245	36,042	36,039	131.1
2018	33,213	3,530	0	36,743	36,736	110.6
2019	33,213	6,925	0	40,139	40,139	120.9

자료: 법무부

또한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의 경우도 최근 4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평균 124%에 달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6년 792억 5,800만원에서 2019년 1,058억 4,600만원으로 4년 동안 265억 8,800만원이나 증가하였다.

[최근 4년간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2016	68,270	10,989	0	79,259	79,258	116.1
2017	75,376	4,819	10,996	91,191	91,190	121.0
2018	77,063	24,479	0	101,542	101,541	131.8
2019	82,981	22,867	0	105,848	105,846	127.6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형사보상금의 연례적 부족에 대하여 2009년 구 「도로법」 제86조 과적차량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결정³⁾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한 법인들이 재심을 신청

3) 단순위헌, 2008헌가17, 2009. 7. 30.,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2006~2010년)에 따른 재심 무죄판결로 인하여 형사보상 청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교정시설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단가 상승과 하절기 폭염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를 그 요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금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액으로 2017년 집행액인 36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33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정시설 공공요금의 경우도 2019년 예산액으로 2017년 집행액(912억원)의 91%인 830억원 가량을 편성한 것은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4년간 형사보상금으로 이·전용 감액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이·전용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6년 2개 사업에서 2019년 15개 세부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민관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 단속 사업은 2016년부터, 과학수사인프라구축, 검찰수사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은 2017년부터 계속해서 형사보상금 부족액의 이·전용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최근 4년간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이·전용 감액된 세부사업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개	13개	13개	15개
- 안전비리등민관 유착비리사범단속	- 안전비리등민관유 착비리사범단속	- 안전비리등민관 유착비리사범단속	- 민관유착비리등 사회공정성저해 사범 단속
- 형집행및범죄수익 환수	- 검찰청시설운영	- 검찰청시설운영	- 검찰청시설운영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 검찰수사지원	- 검찰수사지원	- 검찰수사지원
	- 수사일반	- 수사일반	- 수사일반
	- 공안수사	- 공안수사	- 공안수사
	-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 마약수사	- 마약수사	- 마약수사
	- 성범죄등 4대악 사범단속	- 성범죄등 4대악 사범단속	- 성범죄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단속
	- 형사법정비	- 형사법정비	- 형사법정비
	- 검찰청운영기본 경비(총액)	- 검찰청운영기본 경비(총액)	- 검찰청운영기본 경비(총액)
	- 첨단범죄및디지털 수사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검찰업무정보화	- 검찰청운영인건비 (총액)	- 공소유지
			- 검찰청운영인건비 (총액)
			-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교정시설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교도소운영인건비가 그 이용 재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2016년 122억 1,500만원, 2018년 245억원, 2019년 150억원에 달하고 있다.⁴⁾

4) 2016년과 2018년의 경우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예탁금 부족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최근 4년간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으로 이·전용 감액된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목		세부사업 명	목
2016	자체 이용	교도소운영인건비	110-01	12,215	교정시설 수용관리및공공요금	210-02
2017		예비비		10,996		210-02
	내역 변경	교정교화	210-01	266		210-02
	자체 이용	검찰청운영인건비	110-01	4,500		210-02
2018	자체 이용	교도소운영인건비	110-01	24,500		210-02
2019	자체 이용	교도소운영인건비	110-01	15,000		210-02
	자체 이용	본부인건비	110-01	7,675		210-02

자료: 법무부

물론 이·전용 제도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는 하나, 연례적으로 부족한 형사보상금 및 교정시설 공공요금을 이·전용을 통하여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이·전용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세부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형사보상금의 경우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검찰의 형사보상금 지급기한을 3개월로 명시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18.3.20.)됨에 따라,⁵⁾ 형사보상금의 적기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형사보상 사업 및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연례적인 예산 과소 편성으로 인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형사보상금 등의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 황

특별감찰관 활동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동 프로그램은 특별감찰관 인건비,¹⁾ 특별감찰관 기본경비²⁾ 및 특별감찰활동³⁾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액 16억 8,200만원 중 8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5,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특별감찰관 활동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특별감찰관 인건비	777	777	0	△210	567	0	0	567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386	386	0	0	386	96	0	290
특별감찰활동	519	519	0	210	729	727	0	1
합 계	1,682	1,682	0	0	1,682	823	0	859

자료: 특별감찰관실

나. 분석의견

정부는 특별감찰관의 장기간 공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하여 더 이상 특별감찰관 활동 관련 예산의 불용이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802-150

2) 코드: 일반회계 1818-250

3) 코드: 일반회계 1831-300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특별감찰관인건비의 집행률은 0%, 특별감찰관기본경비는 24.9%로 사무실 관리비, 임차료 등을 편성·집행하는 특별감찰활동 사업의 집행률(99.7%)을 제외하고는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3월 26일 전임 특별감찰관의 중도사직 이후 후속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감찰관 및 소속직원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⁴⁾ 또한 특별감찰관실은 동 법 및 대통령령인 「특별감찰관 직제」에 따라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및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⁵⁾

그런데 2016년 9월 당시 특별감찰관이 임기를 채우지 아니하고 사임하고,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 시까지 그 지위를 보장받았던 감찰담당관 3명도 당연 퇴직한 이후로 현재까지 파견공무원 3명으로 사무실 유지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특별감찰관법」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

- ①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②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5) 「특별감찰관법」

제9조(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 직제」

제7조(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특별감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특별감찰관 공무원 정원표(제7조 관련)	
총계	8
정무직 계	1
특별감찰관(차관급)	1
별정직 계	7
고위공무원단(특별감찰관보)	1
감찰담당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감찰담당관(5급 상당)	5

[특별감찰관실 인원현황('19.12월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특별감찰관실		파견공무원
	정원	현원	
정무직	1	0	0
고위공무원	1	0	0
별정직 3, 4급	1	0	1(4급)
별정직 5급	5	0	0
6급	0	0	2(6급)
계	8	0	3

자료: 특별감찰관실

비록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임 특별감찰관이 사임(2016년 9월)한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특별감찰관 제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채로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약 26억 2,0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

[최근 3개년 특별감찰관 활동 관련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인건비	778	240	805	102	777	0
기본경비	417	161	388	129	386	96
특별감찰활동	1,213	560	1,039	606	519	727
합 계	2,408	961	2,232	836	1,682	823

자료: 특별감찰관실

또한 특별감찰관실은 최초 사무실 계약기간(2015.7.11.~2018.7.10.) 이후 특별감찰관 제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장기계약 당시의 임대료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에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상승 및 임차료 등의 부족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집행하는 등 임차료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연도별 특별감찰관 사무실 관련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합 계
2015	304	145	81	530
2016	9	321	176	506
2017	9	330	180	519
2018	10	427	186	623
2019	10	526	191	727

자료: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의결 시 ‘정부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활동 없이 조직유지 명목으로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특별감찰관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5월과 2018년 8월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이후, 현재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하게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020년에도 특별감찰관활동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임차료 등 6개월분 예산(11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며,⁶⁾ 「특별감찰관법」과 유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4일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특별감찰관의 장기간 공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하여 더 이상 특별감찰관 활동 관련 예산의 불용이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2020년도 특별감찰관활동 관련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편성내역
인건비	376	인건비 63백만원*6개월
기본경비	383	상용임금 158백만원 등
특별감찰활동	383	임차료 및 관리비 64백만원*6개월
합 계	1,142	

[특별감찰관제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비교]

구 분	특별감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근거 법률	특별감찰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이하 생략)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대상 행위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익계약 하거나 알선·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죄,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등
조직 규모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	수사처감사: 처장 1명 및 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그 밖의 행정직원: 20명 이내
임명 절차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 →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처장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임기 등	임기 3년, 중임불가, 정무직공무원 정년 65세	임기 3년, 중임 불가, 특정직공무원 정년 65세

자료: 「특별감찰관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

가. 현 황

일반연구비(260-01목)는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용역비용이다. 법무부는 전산개발 및 임상연구비를 제외한 일반연구비 2019년도 예산현액 34억 4,800만원 중 31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일반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연구비 (260-01목)	3,220	3,220	112	116	3,448	3,123	199	126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의 일반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법무부는 2019년도에 총 125건의 과제 중 95건(76%)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으며, 특히 2,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 과제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96%에 달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최근 4년간 일반연구비 집행실적을 보면, 수의계약 비중이 2016년 127건 중 104건(81.9%)에서 2019년 125건 중 95건(76%)으로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나,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30건 중에서 제한경쟁 방식인 7건을 제외하면 일반경쟁 계약건수는 단 24건으로, 여전히 전체 연구과제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최근 4년간 법무부 부서별 연구용역과제 계약 현황]

(단위: 건)

부 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과제	수익 계약	일반 경쟁	총 과제	수익 계약	일반 경쟁	총 과제	수익 계약	일반 경쟁	총 과제	수익 계약	일반 경쟁
법무실	40	34	6 (1)	44	42	2	37	34	3	41	37	4
인권국	11	10	1	11	9	2	11	9	2	10	7	3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2	3	9	9	1	8	15	5	10	11	2	9 (6)
검찰국	12	12	0	12	9	3	9	9	0	6	5	1
교정본부	3	3	0	5	5	0	4	3	1	4	3	1 (1)
범죄예방 정책국	17	17	0	16	14	2	14	10	4	14	10	4
법무연수원	4	0	4	5	3	2	4	0	4	3	2	1
운영지원과	0	0	0	0	0	0	1	1	0	1	1	0
감찰관실	0	0	0	0	0	0	1	1	0	0	0	0
대검찰청	28	25	3	38	32	6	32	29	3	35	28	7
합 계	127	104	23 (1)	140	115	25	128	101	27	125	95	30 (7)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1)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한경쟁의 경우, ‘일반경쟁’ 건수에 포함하며, 제한경쟁의 경우 ()안에 기재
자료: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수가 많은 부서별로 살펴보면, 법무실이 최근 4년간 162개 과제 중 147개 과제를 수익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여 수익계약 비중이 평균 9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검찰청(평균 85.7%)으로, 법무부 전체 평균(79.8%)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법무실 소관의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구용역 과제 48건 전부를 수익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검찰수사지원 사업과 수사일반 사업의 경우도 총 47건 중 43건과 총 53건 중 51건을 각각 수익계약으로 체결하여 수익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익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4년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의 연구용역 계약현황]

(단위: 건)

세부사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국민편익 증진법제정비	12건 (수의 11, 유찰후 수의 1)	11건 (수의 11)	12건 (수의 12)	13건 (수의 13)	48건 (수의 48)
검찰수사지원	12건 (수의 11, 경쟁 1)	10건 (수의 8, 경쟁 2)	11건 (수의 11)	14건 (수의 13, 경쟁 1)	47건 (수의 43, 경쟁 4)
수사일반	6건 (수의 6)	17건 (수의 16, 경쟁 1)	15건 (수의 15)	15건 (수의 14, 경쟁 1)	53건 (수의 51, 경쟁 2)

자료: 법무부

또한 연구용역 계약금액 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2016년 90%에서 2019년 96%로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르면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예외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분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계약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이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최근 4년간 연구용역 계약금액별 계약체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총 건수 (집행금액)
2019년	수의	68	27	0	95(1,946)
	유찰후 수의	3	12	3	18(752)
	경쟁	0	8	4	12(638)
	합 계	71	47	7	125(3,336)
	수의계약 비중	96%	57%	0%	
2018년	수의	80	20	1	101(2,122)
	유찰후 수의	8	9	1	18(550)
	경쟁	0	6	3	9(451)
	합 계	88	35	5	128(3,123)
	수의계약 비중	91%	57%	20%	
2017년	수의	94	20	1	115(2,206)
	유찰후 수의	4	8	2	14(452)
	경쟁	2	7	2	11(529)
	합 계	100	35	5	140(3,186)
	수의계약 비중	94%	57%	20%	
2016년	수의	73	27	4	104(2,409)
	유찰후 수의	6	8	0	14(390)
	경쟁	2	6	1	9(323)
	합 계	81	41	5	127(3,123)
	수의계약 비중	90%	66%	80%	

자료: 법무부

둘째,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일부 과제의 경우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집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연구용역에서의 수의계약 비중도 평균 59.3%에 달하고 있는데, 2019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 시험관리 사업 등 총 4개 세부사업의 연구용역의 경우 수행기관이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교수, 컨설팅 업체 등으로 법무부가 수의계약 사유로 밝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과제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과제]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용역과제명	계약 금액	수행기관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 시험관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25,000	국민대 산학협력단
검찰수사지원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유형 및 양형에 관한 연구	50,000	영남대 김00 교수
	검찰 구성원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 그램 개발 연구	40,000	연세대 최00 교수
	검찰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및 평가 인자 개발 연구	30,000	성균관대 김00 교수
	웹하드카르텔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5,000	원광대 한00 교수
수사일반	검찰사무관 역량평가 모의과제 개발 및 시범방안 연구	40,000	(주)휴래드컨설팅
형사법정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 방안	30,000	한국형사법학회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수의계약은 경쟁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연구수행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 소지의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연구용역 과제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과 2018년 연속해서 특정 기관의 특정인에게 같은 기간 2건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2019년에도 동일한 기관에 2건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용역 과제 집행 사례]

(단위: 천원)

연도	과제명	계약 금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수행자	계약 방식
2017	개정 프랑스 민법 중 물권법 담보법(제2권, 제4권)의 번역	15,000	2017.7.11.~ 2017.12.10	한불민사 법학회	남00	수의
2017	개정 프랑스 채권법(제3권 제3편)의 번역 및 해제	15,000	2017.7.11.~ 2017.12.10	한불민사 법학회	남00	수의
2018	개정 프랑스 채권법(제3권 제4편, 제4편의 을)의 번역 및 해제	15,000	2018.7.16.~ 2018.12.16	한불민사 법학회	남00	수의
2018	프랑스 민법 중 상속, 무상양여(제3권제1편, 제2편)의 번역	15,000	2018.7.16.~ 2018.12.16	한불민사 법학회	남00	수의
2019	프랑스 민법 중 서편 및 인의 번역(제1권 1~6편)	20,000	2019.5.30.~ 2019.11.30	한불민사 법학회	남00	수의
2019	프랑스민법전(제1권 7~14편)의 번역	20,000	2019.6.20.~ 2019.11.30	한불민사 법학회	이00	수의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상기의 5건의 연구용역 수행자는 한불민사법학회장으로 프랑스 민법에 관한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대상 법률이 방대하여 수년에 걸쳐 관련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연속해서 특정 기관의 특정인과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무부는 향후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교도작업 사업¹⁾은 수형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이에 따른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작업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설보완 사업²⁾은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신설, 개량, 확충 등으로 교도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업장 신·증축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무부는 교도작업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535억 1,700만원 중 520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시설보완 사업의 2019년도 예산현액 107억 1,500만원 중 100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교도작업 및 시설보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도작업	53,517	53,517	0	0	53,517	52,059	0	1,458
시설보완	10,930	10,930	0	△215	10,715	10,005	515	195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형법」에 따라 정역(定役)의무가 부과된 수형자 중 약 3,500명이 부적합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교도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교도작업 미 작업자 등의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교도작업특별회계 1535-300

2) 코드: 교도작업특별회계 1535-302

「형법」 제67조3)에서는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9조4)에서는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되,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5)에서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작업장 부족 등의 이유로 작업부와 적격자인 2만 3,522명 중 실제 작업장에서 생산작업에 참여한 수형자는 약 2만명(85%)에 그치고 있으며, 1,902명은 수용거실에서 쇼펍백 제작 등 단순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1,588명은 교도작업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 수형자 교도작업 집행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작업부와 적격자(A)		23,928	24,928	23,182	23,522
작업자(B)	생산작업	19,701	20,915	19,554	20,032
	거실작업	2,399	2,113	1,856	1,902
미작업자(A-B)		1,828	1,900	1,772	1,588
정역집행률(B/A)		92.4	92.4	92.4	93.2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무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약 111억원을 투입하여 작업장 확충을 위한 시설보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작업부와 적격자 중 실제로 교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정역집행률은 2017년 92.4%에서 2019년 93.2%로 최근 3년간 0.8%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 3)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 4)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작업장 확충을 위한 시설보완 사업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기관명	작업장 수	작업인원	집행액
2017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1	30	20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	30	630
2018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	53	1,080
	상주교도소	1	35	899
	경북직접훈련교도소	1	20	486
	순천교도소	2	100	1,689
2019년	경북북부제1교도소	2	240	2,496
	정읍교도소	1	50	969
	청주여자교도소	2	70	1,514
	장흥교도소	1	40	1,107
합 계		13	668	11,072

자료: 법무부

또한 법무부는 2020년에도 작업장 신축을 위한 시설보완 사업 예산액으로 72억 4,700만원을 편성하여 4개 교도소에 작업장 신축공사를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준공 후 약 240명의 수행자가 추가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2019년 기준 미작업자가 1,588명이고 거실작업자도 1,902명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작업장 확충을 위한 시설보완 사업 추진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기관명	면적	작업장 수	작업예정인원	예산액
천안교도소	지상2층, 858㎡	2	50	1,947
장흥교도소	지상1층, 660㎡	1	70	1,300
군산교도소	지상2층, 660㎡	2	50	2,000
강릉교도소	지상2층, 660㎡	2	70	2,000
합 계		7	240	7,247

자료: 법무부

교도작업은 일반적인 노동과는 달리 처벌인 동시에 출소 후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교화개선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수행자에게는 작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작업부과 적격자로 분류된 수행자가 작업장 부족으로 인하여 법률에 규정된 정역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회

복귀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작업장려금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단기간에 정액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작업장을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작업장 확충을 위한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교정기관별 교도작업 미 작업자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특정 수형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도소별 미작업자 현황]

(단위: 명)

기관명	미작업자	기관명	미작업자	기관명	미작업자
서울구	21	창원교	26	청주여자	22
안양교	33	부산교	44	공주교	29
수원구	12	포항교	55	충주교	7
서울동부(구)	47	진주교	8	홍성교	9
인천구	17	대구구	10	천안개방	0
서울남부구	11	경북직훈교	5	서산지소	8
화성직훈	82	안동교	8	논산지소	4
의정부교	23	경북북부2교	168	광주교	52
여주교	51	김천소년교	32	전주교	57
서울남부교	47	경북북부3교	40	순천교	61
춘천교	33	울산구	1	목포교	37
원주교	36	경주교	17	군산교	41
강릉교	18	통영구	8	제주교	13
영월교	-	밀양구	24	장흥교	23
평택지소	15	상주교	14	해남교	14
대구교	82	대전교	83	정읍교	21
부산구	7	청주교	20	총계	1,588
경북북부1교	49	천안교	48		

자료: 법무부

가. 현 황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¹⁾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에 대한 보조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등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긴급생계비 등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2019년도 계획현액 197억 2,100만원 중 188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B) [실집행액]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9,620	19,721	0	0	19,721	18,859	95.6	71	791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3,465	3,465	0	0	3,465	3,465 [3,445]	100	0	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법적 근거 없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사용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등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범죄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²⁾인 범죄피해자지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5-300

원센터(59개소) 및 연합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지원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관련 계획현액 34억 6,500만원 대비 실행액은 34억 4,481만원(99.43%)이다.

그런데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합회 포함)의 설치장소를 살펴보면 전체 60개소 중에서 55개소³⁾가 국유재산인 검찰청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⁴⁾.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국유재산법」 제34조⁵⁾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⁶⁾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속초, 영월, 제천·단양, 김천·구미, 장흥·강진 등 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 청사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4)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6)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전액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기부채납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7)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8)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검찰청 방문만으로 검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최소한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사무실 청사의 외부 이전이나 청사 사용료 부과는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속초, 영월, 제천·단양, 김천·구미, 장흥·강진 등 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 청사 밖에 위치하고 있고 임차료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비록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없는 검찰청 청사의 무상사용문제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60개소) 소재지 현황]

연번	명칭	소재지	검찰청 내/외
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07호	내
2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B110호	내
3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102호	내
4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312호	내
5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219호	내
6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별관102호	내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연번	명칭	소재지	검찰청 내/외
7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검 제1신관 243호	내
8	고양·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 고양시 고양지청 414호	내
9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1125호	내
10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 부천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101호	내
11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지검 207호	내
12	성남·광주·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검 성남지청 별관 152호	내
13	여주·이천·양평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 여주시 수원지검 여주지청 101호	내
14	평택·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 평택시 수원지검 평택지청 108호	내
15	안산·시흥·광명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 807호	내
16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검 안양지청 106호	내
17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도 춘천시 춘천지검 111호	내
18	강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춘천지검 강릉지청 113호	내
19	원주·횡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춘천지검 원주지청 107호	내
20	속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209	외
21	영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 1길 34	외
22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 서구 대전지검 209호	내
23	홍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 318호	내
24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남 공주시 대전지검 공주지청 102호	내
25	논산·부여·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남 논산시 대전지검 논산지청 304호	내
26	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남 서산시 대전지검 서산지청 312호	내
27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천안시 동남구 대전지검 천안지청 102호	내
28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청주지검 208호	내
29	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북 충주시 청주지검 충주지청 108호	내
30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179 오화빌딩 2층	외
31	영동·옥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북 영동군 청주지검 영동지청 107호	내
32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 수성구 대구지검 2315호	내
33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대구지검 서부지청 114호	내
34	경북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안동시 대구지검 안동지청 115호	내
35	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대구지검 경주지청 305호	내
36	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대구지검 포항지청 213호	내
37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김천시 김천로 150. 2층	외
38	상주·문경·예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상주시 대구지검 상주지청 109호	내
39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의성군 대구지검 의성지청 209호	내

연번	명칭	소재지	검찰청 내/외
40	영덕·울진·영양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경북 의성군 대구지검 의성지청 209호	내
41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117호	내
42	부산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 417호	내
43	부산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시 강서구 부산서부지청 413호	내
44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시 남구 울산지검 별관 122호	내
45	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322호	내
46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 진주시 창원지검 진주지청 207호	내
47	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경남 통영시 창원지검 통영지청 102호	내
48	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 밀양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212호	내
49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경남 거창군 창원지검 거창지청 별관	내
50	마산·함안·의령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검 마산지청 402호	내
51	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주시 동구 광주지검 209호	내
52	목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남 목포시 광주지검 목포지청 108호	내
53	장흥·강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43	외
54	전남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남 순천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526호	내
55	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남 해남군 광주지검 해남지청 별관 2층	내
56	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검 121호	내
57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북 군산시 전주지검 군산지청 별관 103호	내
58	정읍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북 정읍시 전주지검 정읍지청 412호	내
59	남원·순창·장수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전북 남원시 전주지검 남원지청 11호	내
60	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도 제주시 제주지검 216호	내

가. 현 황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¹⁾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²⁾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³⁾에 따라 보복범죄의 위험이 있는 중대범죄의 범죄피해자나 증인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하여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이전비 또는 임시숙소를 제공하여 2차 피해 방지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계획현액 10억 8,600만원 중 10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을 불용하였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5-306

-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19회계연도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086	1,086	0	0	1,086	1,041	95.8	0	45
이전비 지원	300	200	0	0	200	156	78.0	0	44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전비 지원 사업의 집행주체를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이전비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신변보호 장치 구입 및 유지비, 이전비 지원, 임시 안전숙소 제공 사업은 모두 범죄피해 초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변보호 장치 구입 및 유지비 사업은 중대범죄 피해자 및 증인이 보복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112긴급신고, 위치확인, 강제수신 기능이 있는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공동집행하고 있고, 이전비 지원 사업은 보복범죄를 피하고자 거주지를 변경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이사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찰청에서 집행하고 있다. 또한 임시 안전숙소 제공 사업은 범죄발생 이후 주거지 노출로 당장 의탁할 장소가 없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찰청에서 집행하고 있다.

[내역사업별 집행기관 비교]

구 분	사업내용	집행기관
신변보호 장치 구입 및 유지비	112긴급신고, 위치확인, 강제수신 기능이 있는 위치확인장치 배부	검찰청·경찰청
이전비 지원	보복범죄를 피하고자 이사하는 경우 이전비 지원	검찰청
임시 안전숙소 제공	범죄발생 이후 임시숙소 제공	경찰청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19년도 기준 내역사업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이전비 지원 사업은 52%로 신변보호장치 및 임시안전숙소 사업의 집행률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4년간 집행률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2020년 계획액도 2019년 대비 1억원 감액된 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결산			2017결산			2018결산			2019결산		
	계획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획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획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획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신변보호 장치	311	253	81.4	311	286	92.0	311	269	86.5	311	310	99.7
이전비 지원	300	189	63.0	300	195	65.0	300	133	44.3	300	156	52
임시 안전 숙소	475	447	94.1	475	579	121.9	475	475	100	475	575	121.1
계	1,086	889	81.9	1,086	1,060	97.6	1,086	877	80.7	1,086	1,041	95.9

자료: 법무부

대검찰청예규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 따르면 위치확인장치의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경찰접수사건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이전비 지원은 검사가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범죄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검찰청에 이전비 지원 신청을 하거나 범죄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의 신청을 경찰에 하는 경우에도 이전비 지원은 검찰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검찰이 이전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이전비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16.7일이 걸리는 등 피해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⁴⁾

4)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찰을 통해 이전비 지원신청이 이루어진 40건을 분석한 결과, 이전비 신청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40명 중 38명), 피해내용은 성범죄 11건, 주거침입 10건, 가정폭력 9건 순이었으며, 이전비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16.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 작성 서류만으로 신청 가능한 위치확인 장치와는 달리 이전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자비로 이사를 한 후 이사비 영수증, 부동산 계약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과 서류준비의 어려움도 이전비 집행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전비 지원 사업을 경찰청에서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이전비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과적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법무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업 실적제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3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지원사업 퇴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사회복귀 성과제고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10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기금을 직접적인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필요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pp.14



법제처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9,59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1.8%인 1,134만원을 수납하고 8,458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96	11	85	0	11.8

자료: 법제처

2019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62억 9,000만원이며, 이 중 95.7%인 347억 3,315만원을 지출하고 15억 5,685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6,179	36,179	36,290	34,733	0	1,557	95.7

자료: 법제처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법제처의 자산은 140억 6,451만원, 부채는 1,971만원으로 순자산은 140억 4,480만원이다.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101억 2,157만원, 무형자산 33억 7,643만원, 유동자산 5억 2,133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5억 9,259만원(10.2%) 감소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 등에 따른 무형자산 16억 8,465만원 감소,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기타유동자산으로의 대체로 기타비유동자산 5억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971만원으로 구성되며, 장기충당부채는 전기 대비 1,089만원(순감) 감소하였다.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인 장기충당부채의 1,089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4,065	15,657	△1,592	△10.2
Ⅰ. 유동자산	521	25	496	1984.0
Ⅱ. 투자자산	43	0	43	순증
Ⅲ. 일반유형자산	10,121	10,069	52	0.5
Ⅳ. 무형자산	3,376	5,061	△1,685	△33.3
Ⅴ. 기타비유동자산	2	502	△500	△99.6
부 채	20	31	△11	△35.5
Ⅰ. 유동부채	20	20	0	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0	11	△11	순감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14,045	15,626	△1,581	△11.3
Ⅰ. 기본순자산	3,973	3,973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8,500	10,082	△1,582	△18.6
Ⅲ. 순자산 조정	1,571	1,571	0	0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91억 6,331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61억 6,885만원, 관리운영비는 없으며, 비배분비용 58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134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8억 5,549만원(7.9%) 증가한 391억 6,331만원이며, 이는 주로 인건비 증가 및 프로그램 통폐합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337억 9,194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프로그램순원가는 정부입법총괄지원 프로그램(391억 6,885만원)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통폐합에 따라 관리운영비 309억 4,736만원 순감하였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288만원과 기타비용 29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39,169	5,377	33,792	628.5
II. 관리운영비	0	30,947	△30,947	순감
III. 비배분비용	6	25	△19	△76.0
IV. 비배분수익	11	41	△30	△73.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9,163	36,308	2,855	7.9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9,163	36,308	2,855	7.9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156억 2,65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40억 4,480만원으로 기초 대비 15억 8,170만원(10.1%)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391억 6,331만원이고, 순자산 가산 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375억 8,160만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재원조달 등 375억 9,294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134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없다.

[2019회계연도 법제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5,627	16,878	△1,251	△7.4
Ⅱ. 재정부운영결과	39,163	36,308	2,855	7.9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7,582	35,056	2,526	7.2
Ⅳ. 조정항목	0	0	0	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4,045	15,627	△1,582	△10.1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기관운영경비,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 법령정보제공,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법령심사지원, 법제정비 사업이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률 근거가 없으므로 기관운영경비 관련 예산 1억원, 불필요한 홈페이지 메뉴를 줄이고 유사중복 콘텐츠로 혼란야기가 우려되는 서비스가 있어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사업에서 3,000만원, 온라인 플랫폼 ‘여기로’의 운영성과 저조에 따른 법령정보제공 예산 1억원, 법제 100년사 연구사업은 해당 세부사업과 사업 목적이 맞지 않으므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예산 8,700만원, 법률제명약칭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법령심사지원에서 1,200만원, 재정일자리 창출용 사업으로 보이는 알기쉬운 법제구축 사업비 1억원 감액 등 총 4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대의견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투명화가 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회 운영 투명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위원 및 신규위원의 명단 공개방안을 마련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개별위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문장 체계를 정비 ② 어려운 법률용어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정비를 실시하여 국민의 법령 이해도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중심의 민주적 법문화 기반을 마련을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최근 4년간 정부가 국회에 당초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은 평균 54.5%에 불과하는 등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제처는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분야별로 위촉위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제처는 청소년법제관 사업의 목적인 입법체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많은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학교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법령심사지원 사업¹⁾은 정부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안을 입안할 때부터 정책을 조문화하고 법리적 쟁점을 검토·지원하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2019년도 예산현액 3억 2,000만원 중 3억원(93.8%)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법령심사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령심사지원	300	0	0	20	320	300	93.8	0	20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최근 4년간 정부가 국회에 당초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은 평균 54.5%에 불과하는 등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 제도의 도입취지 달성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제처는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032-300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하면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 계획을 총괄·조정하며,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처장은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국회법」 제5조의3²⁾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정부가 당초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국회 제출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205건 대비 121건(59%)에서 2019년 214건 대비 117건(54.7%)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평균 이행률도 54.5%에 불과하여 당초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절반 가까이의 법률안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당초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국회제출 현황]

(단위: 건, %)

연도	당초 계획	당초 계획대비 국회제출건수	이행률
2016	205	121	59.0
2017	258	138	53.5
2018	347	182	52.4
2019	214	117	54.7
합 계	1,024	558	54.5

자료: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입법계획 추가 및 입법

2)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획 철회 건수가 당초 제출한 법률안 제출계획 1,195건 대비 1,057건(88.5%)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입법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동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

[최근 4년간 당초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수정 법률안 제출계획 현황]

(단위: 건)

연도	당초 계획	입법계획 추가	입법계획 철회	수정 계획
2016	376 ¹⁾	121	138	359
2017	258	211	153	316
2018	347	64	172	239
2019	214	95	103	206
합 계	1,195	491	566	1,120

주: 1) 제20대국회 개원 후(2016년 6월) 국회에 재통보한 법률안 제출계획 기준
자료: 법제처

더욱이 소관부처별로 2019년 당초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국회 제출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12건 중 1건(8.3%)만이 제출되었고, 국가보훈처가 9건 중 1건(11.1%), 보건복지부가 7건 중 3건(42.9%), 환경부가 30건 중 14건(46.7%), 법무부가 19건 중 9건(47.4%)만이 제출되는 등 평균 이행률(54.7%)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소관부처별 2019년도 당초 법률안 제출계획 대비 국회제출 현황]

(단위: 건, %)

연도	소관부처	당초 입법계획	당초 입법계획대비 국회제출건수	이행률
2019	기획재정부	21	15	71.4
	교육부	5	3	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2	100.0
	법무부	19	9	47.4
	국방부	12	9	75
	행정안전부	36	29	80.6
	문화체육관광부	12	1	8.3
	농림축산식품부	13	7	53.8

(단위: 건, %)

연도	소관부처	당초 입법계획	당초 입법계획대비 국회제출건수	이행률
	산업통상자원부	2	0	0.0
	보건복지부	7	3	42.9
	환경부	30	14	46.7
	고용노동부	4	3	75.0
	여성가족부	1	0	0
	국토교통부	13	7	53.8
	해양수산부	10	5	50.0
	국가보훈처	9	1	11.1
	인사혁신처	1	1	100
	식품의약품안전처	3	1	33.3
	방송통신위원회	3	2	66.7
	금융위원회	6	4	66.7
	국민권익위원회	1	0	0.0
	원자력안전위원회	2	1	50.0
	국가인권위원회	2	0	0.0
	합 계	214	117	54.7

자료: 법제처

또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제출된 법률안 중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의 67.5%인 27건이 임시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법률안의 55.8%인 87건이 정기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정부제출 법률안 제출시기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법률안
임시국회	27(67.5%)	69(44.2%)
정기국회	13(32.5%)	87(55.8%)
합 계	40	156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법」 제5조의3의 ‘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조항은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시 도입되었는데,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안의 국회 제출이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출시기를 안배하고 법률안 제출계획의 이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¹⁾은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및 운영지원과 일반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제처는 2019년도 예산현액 20억 5,200만원 중 20억 2,500만원(98.7%)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기본경비	2,052	2,052	0	0	2,052	2,025	98.7	0	27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분야별로 위촉위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²⁾에 따라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에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434-320

-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1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 지명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명위원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지명위원 그리고 150명 내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촉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가 수행하는 법령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며,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위원의 위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말 기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총 126명 중 변호사가 71명, 교수가 49명으로 위촉위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원 등은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위촉위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전문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헌법, 행정법, 법학, 민사법 등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문분야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위원도 32명에 이르고 있다.

[2019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교수	변호사	연구원등	합 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	49	71	6	126

자료: 법제처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분야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촉위원 현황]

(단위: 명)

헌법	법학	행정법	민사법	형사법	노동법	공정거래법 경제법	지적 재산권법	금융 보험등	기타	무기재
9	13	15	13	8	5	5	4	12	10	32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위촉위원을 전문분야별로 위촉 및 관리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하여, 법제처는 위촉위원을 전문분야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³⁾ 심의 안건별로 주심을 지정하여 주심이 해당 안건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을 감안할 때,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위원을 위촉 및 관리함으로써 법령해석업무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법제처는 향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분야별로 위촉위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가. 현 황

법령정보제공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입법체험활동을 통해 민주 시민의식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법제처는 2019년도 예산현액 1억 900만원 중 1억 700만원(98.2%)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청소년법제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령정보제공	1,476	1,476	0	0	1,476	1,454	98.5	0	22
청소년법제관	109	109	0	0	109	107	98.2	0	2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법제처는 청소년법제관 사업의 목적인 입법체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식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많은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학교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12. 2. 6.) 이후, 학교폭력 문제의 해소와 청소년 전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청소년법제관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규칙을 만들어보고 연말에 학교별로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사례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학교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현하 예산분석관(sable@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434-320

법제처는 동 사업을 위하여 매년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총 10개교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여 1개교 당 25명 내외의 학생을 청소년법제관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매년 3월에 모집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청소년법제관의 시기별 주요활동 현황]

구 분	주요 활동
5~7월	학교별로 기본적인 법령체계, 생활법령 소개 등 법교육을 진행하여 청소년법제관들이 학교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을 이해
9월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이나 학교 규칙 등을 주제로 전국의 청소년법제관들이 모여 토론하는 법령 토론대회
10~11월	청소년법제관이 속한 학교의 실제 학교규칙을 가지고 더 나은 규칙으로 개정하거나 필요한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보는 활동
12월	대한민국 입법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탐방하고 1년 동안 청소년법제관으로서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

자료: 법제처

그런데, 최근 5년간 청소년법제관 선정학교를 보면 대전 하기중학교, 광주 선운중학교, 부산 기장중학교 등 특정학교가 2개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동일 지역에서 2개교 이상이 선정된 경우도 있는 등 편중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청소년법제관 선정학교 현황]

구 분	학교 수 (지역 수)	학교명(지역명)
2015	8개교 (8개)	부원여중(인천), 영일중(경기), 충북여중(충북), 경상중(대구) 경상여중(경북), 창진중(부산), 남창중(울산), 문산중(경남)
2016	8개교 (6개)	대경중(서울), 비전중(경기), 대전대성중·대전대화중(대전), 조치원여중·한솔중(세종), 삼례중(전북), 풍천중(경북)
2017	10개교 (10개)	용현여중(인천), 별내중(경기), 대전하기중(대전), 보람중(세종), 홍성중(충남), 순창중(전북), 선운중(광주), 왕선중(대구), 의흥중(경북), 분포중(부산),
2018	12개교 (6개)	남원주중(강원), 대전하기중(대전), 여진중·새뜸중(세종), 선운중(광주), 연제중·신호중·기장중·부산서중(부산), 죽변중·선주중·대동중(경북),
2019	10개교 (6개)	서울삼육중·청심국제중(경기), 대전탄방중(대전), 성환중(충남), 고창여중(전북), 대창중·영남삼육중·죽변중(경북), 기장중·동의중(부산)

자료: 법제처

더욱이 광역자치단체별로 청소년법제관 선정학교를 살펴보면, 전라남도과 제주도는 최근 5년간 선정된 학교가 1개교도 없었으며, 서울, 울산,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의 경우도 1개교에 그쳤다. 반면에 경상북도가 9개교, 부산이 8개교, 대전 및 세종, 경기도가 각각 5개교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청소년법제관 선정학교 현황]

(단위: 개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서울	0	1	0	0	0	1
부산	1	0	1	4	2	8
대구	1	0	1	0	0	2
인천	1	0	1	0	0	2
광주	0	0	1	1	0	2
대전	0	2	1	1	1	5
울산	1	0	0	0	0	1
세종	0	2	1	2	0	5
경기	1	1	1	0	2	5
강원	0	0	0	1	0	1
충북	1	0	0	0	0	1
충남	0	0	1	0	1	2
경북	1	1	1	3	3	9
경남	1	0	0	0	0	1
전북	0	1	1	0	1	3
전남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자료: 법제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시·도별 교육청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지역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가능하면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법제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는 청소년법제관 사업에 보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감사원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억 7,500만원이며, 19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0.1%인 15억 9,2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9,5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75	475	475	1,987	1,592	395	0	80.1

자료: 감사원

2019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37억 9,100만원이며, 이 중 94.2%인 1,260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 3,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감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19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32,418	132,418	133,791	126,080	3,680	4,031	94.2

자료: 감사원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감사원의 자산은 1,745억 8,400만원, 부채는 8억 7,700만원으로 순자산은 1,737억 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0억 5,000만원, 일반유형자산 1,656억 2,700만원, 무형자산 70억 2,6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8억 8,1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2억 5,500만원(1.3%) 감소하였다. 이는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개발 관련 선급금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16억 7,300만 원 감소, 감가상각에 따른 유무형자산 9억 5,300만원 감소, 지방관사 임차보증금 등 기타비유동자산 3억 7,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400만원, 장기충당부채 8억 5,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억 2,500만원(34.5%) 증가하였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 무보조원 등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2억 2,5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74,584	176,839	△2,255	△1.3
Ⅰ. 유동자산	1,050	2,723	△1,673	△61.4
Ⅱ. 일반유형자산	165,627	165,875	△248	△0.1
Ⅲ. 무형자산	7,026	7,731	△705	△9.1
Ⅳ. 기타비유동자산	881	510	371	72.7
부 채	877	652	225	34.5
Ⅰ. 유동부채	24	11	13	118.2
Ⅱ. 장기충당부채	853	641	212	33.1
순 자 산	173,707	176,187	△2,480	△1.4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401억 7,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408억 6,800만원, 비배분비용 1,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익 5억 9,000만원, 비배분수익 1억 2,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2억 9,000만원(2.4%) 증가한 1,401억 7,2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19억 8,700만원, 복리후생비 3억 8,9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140,278	136,896	3,382	2.5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15	17	△2	△11.8
IV. 비배분수익	121	31	90	290.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40,172	136,882	3,290	2.4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40,172	136,882	3,290	2.4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1,761억 8,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737억 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4억 8,000만원(1.4%)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401억 7,2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항목이 1,371억 9,100만원 발생하였고, 기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조정항목이 5억 1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세출결산액) 1,260억 8,000만원, 공무원 연금 등 국가부담액 127억 300만원 등 재원의 조달 1,387억 8,300만원과 재원의 이전 △15억 9,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유형자산(토지) 재평가이익 5억 2,800만원과 유형자산(건물) 재평가이익 중 당기 감가상각에 따른 환입 △2,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감사원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76,187	177,001	△814	△0.5
II. 재정운영결과	140,172	136,882	3,290	2.4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37,191	136,095	1,096	0.8
IV. 조정항목	501	△27	528	1,955.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73,707	176,187	△2,480	△1.4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감사활동경비 사업이 있다.

감사활동경비는 감사권익보호관 자문실적을 고려하여 일반수용비가 5,400만원,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3억 1,000만원, 업무추진비는 1억원이 감액되었다.¹⁾

1) 법제사법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8.11.
국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12.

감사원은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에 적극 동참하면서 감사환경 변화 및 감사 프로세스 개선 등에 따라 감사활동 관련 경비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하고, 절감 재원은 신규사업을 위한 소요재원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감사원이 운영하는 적극행정지원제도 중 사전컨설팅제도의 기한 내 처리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전컨설팅 결과 회신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처리(fast-track) 제도를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이용 활성화 노력 필요

가. 현 황

감사활동경비¹⁾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감사직무감찰 등 감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회계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2019년도 예산현액 220억 3,900만원 중 217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9회계연도 감사활동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활동경비	21,383	21,383	241	415	22,039	21,729	105	205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감사의 부작용인 관행적·소극적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적극행정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최초로 적극행정면책제도²⁾를 도입하였으나, 적극행정면책제도의 경우 사후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감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수진 예산분석관(soo@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3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로써, 감사 착수 이후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행정면책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책임을 면책 또는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18년 「적극행정지원을 위한 감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상설조직으로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는 한편 사전컨설팅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 현황]

구분	내용	도입시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	2009. 1.
사전컨설팅 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2019. 1.
모범사례 포상 제도	국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도	1982. 1.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업무담당자의 소극적 행위 등 기업 활동에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제보받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를 운영	2019. 2.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이 중 사전컨설팅 제도는 일선 행정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감사원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는 제도로, 2019년 1월 도입되었다.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이 감사원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것을 원칙³⁾으로 한다.

- 3)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사후 구제수단에 불과하고 면책되지 않을 경우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사전 컨설팅 제도는 행정업무 수행의 리스크를 공무원과 감사원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후 감사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한 내 처리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전컨설팅 결과 회신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처리(fast-track) 제도를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신청 후 30일 이내⁴⁾ 검토 결과를 신청기관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도 사전컨설팅 제도 처리 현황을 보면, 기한인 30일 내 처리한 건수가 총 처리건수 82건 중 44건(53.7%)에 불과하며, 60일 이상 소요된 경우도 7건(8.5%)에 달하는 등 결과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사전컨설팅 제도 처리 현황]

(단위: 건)

기한 내 처리건수 (30일 이내)	처리기한 경과 후 처리건수				총 처리건수
	31~40일	41~50일	51~60일	60일 이상	
44 (53.7%)	23 (28.0%)	7 (8.5%)	1 (1.2%)	7 (8.5%)	82 (100%)
	38 (46.3%)				

자료: 감사원

4) 중요사항으로서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경우 60일 이내, 다만 신중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사전컨설팅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전 미리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서,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 받은 이후 업무를 처리하여야 사후에 면책 추정될 수 있으므로 결과 회신의 신속성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처리 결과 회신에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경우, 행정업무 처리 지연 및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는 공직자로 하여금 사전컨설팅 제도 이용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거나 중앙부처 등에서 소요되는 컨설팅 의견 조화·회신 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전컨설팅 신속성 제고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전컨설팅 문의가 폭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과 회신 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 제도 개요 및 현황]

□ 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관광·중기/소상공인 등 관련업종의 피해 확대, 경제 위기 대응대책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사전컨설팅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패스트트랙(fast-track) 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컨설팅 접수 시 신속히 대응

□ 현황

- 접수로부터 5일 이내 처리·회신함을 원칙으로 컨설팅 수행
- 착수보고 및 현지조사 생략, 중앙행정기관 등 외부기관 의견조회는 공문 대신 의견서·확인서·메일 등으로 대체(필요시 사후 보완)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 제도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책적 대응에 기여하는 등⁵⁾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 및 대상을 구체화한 후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컨설팅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총 670개 공공기관 2,9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하여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이 37.9%로 나타나고 있다.⁶⁾

[사전컨설팅 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	계
응답자 수	367	562	916	675	447	2,967
비중	12.4	18.9	30.8	22.8	15.1	100

자료: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동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설문 대상자 중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7%(1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제도 홍보를 위하여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을 발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감사담당자 등 교육을 위하여 권역별 순회교육과 기관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5) 일례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 있어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처리가 지연되자 현장실사를 생략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변경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적 이해관계 등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집행을 독려하였다.

6)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 감사원, 2019. 10.

그러나 감사원의 적극행정지원제도 관련 교육 실적을 보면, 2018년의 경우 총 3,898명을 대상으로 23회(지방자치단체 10회, 공공기관 13회)를 실시하였으나 2019년의 경우 총 2,294명을 대상으로 11회(권역별 5회, 공공기관 6회)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교육 실적이 저조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로서 사전컨설팅 제도의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제고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각도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향후 감사원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제 제도를 활용하게 될 공무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대법원 세입예산현액은 9,154억 6,900만원이며, 7,168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7,157억 200만 원을 수납하고 11억 7,900만 원을 미수납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00,795	600,795	600,795	429,538	428,359	1,178	-	99.7
등기특별회계	314,674	314,674	314,674	287,343	287,343	1	-	99.9
합계	915,469	915,469	915,469	716,881	715,702	1,179	-	99.8

자료: 대법원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9,394억 500만원이며, 이 중 94.1%인 1조 8,257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91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44억 9,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622,520	1,622,520	1,622,978	1,579,123	465	43,390	97.3
등기특별회계	314,674	314,674	316,427	246,676	8,645	61,106	78.0
합계	1,937,194	1,937,194	1,939,405	1,825,799	9,110	104,496	94.1

자료: 대법원

나. 기금 결산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745억 6,700만원이며, 954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1%인 945억 6,900만원을 수납하고 8억 4,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4,567	74,567	74,567	95,416	94,569	846	1	99.1

자료: 대법원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745억 6,700만원이며, 이 중 126.8%인 945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억 3,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4,567	74,567	74,567	94,569	50	4,033	126.8

자료: 대법원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571억 4,500만원 (17.6%)이 감소한 7,336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41억 3,000만원 (2.0%)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64,527	825,835	825,835	648,833	△177,002	△15,694
기금	55,001	64,968	64,968	84,825	19,857	29,824
합계	719,528	890,803	890,803	733,658	△157,145	14,130

자료: 대법원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54억 3,000만원 (3.4%)이 감소한 1조 8,399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08억 1,200만원(2.3%)이 증가하였다.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결산(A)	2019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763,579	1,852,831	1,852,831	1,791,484	△61,347	27,905
기금	35,575	52,565	52,565	48,482	△4,083	12,907
합계	1,799,154	1,905,396	1,905,396	1,839,966	△65,430	40,812

자료: 대법원

라.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대법원의 자산은 6조 8,782억 4,400만원, 부채는 798억 4,900만원으로 순자산은 6조 7,983억 9,4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635억 300만원, 일반유형자산 6조 7,652억 8,500만원, 무형자산 438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734억 6,700만원(2.6%) 증가하였다. 이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채권, 기타유동자산 등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382억 6,000만원 증가, 토지 및 건물 취득 등의 증가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1,375억 2,600만원 증가, 소프트웨어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른 무형자산 17억 9600만원 감소, 장기임차보증금의 감소에 따른 기타비유동자산 5억 2,3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324억 5,700만원, 장기차입부채 473억 3,600만원, 장기충당부채 5,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억 2,800만원(0.8%) 감소하였다. 이는 기타 유동부채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47억 4,000만원 증가, 금융리스부채 감소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54억 2,400만원 감소,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5,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 산	6,878,244	6,704,777	173,467	2.6
Ⅰ. 유동자산	63,503	25,243	38,260	151.6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6,765,285	6,627,759	137,526	2.1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43,897	45,693	△1,796	△3.9
Ⅵ. 기타비유동자산	0	0	0	0
부 채	79,849	80,477	△628	△0.8
Ⅰ. 유동부채	32,457	27,717	4,740	17.1
Ⅱ. 장기차입부채	47,336	52,760	△5,424	△10.3
Ⅲ. 장기충당부채	56	0	56	-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6,798,394	6,624,299	174,095	2.6
Ⅰ. 기본순자산	3,931,501	3,931,501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801,528	697,502	104,026	14.9
Ⅲ. 순자산 조정	2,065,365	1,995,295	90,089	4.5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조 4,375억 5,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4,668억 7,4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5,825억 8,500만원, 비배분비용 80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5억 1,300만원, 비배분수익 5,349억 4,500만원, 비교환수익 등 844억 9,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결과(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비교환수익)는 1조 4,375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9억 4,400만원(5.2%)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재판활동지원 및 사법정보화운영 프로그램 추가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3,827억 6,700만원 증가하고, 관리운영비가 3,070억 7,7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총 3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재판활동지원프로그램(2,364억 800만원)과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873억 500만원), 사법정보화운영 프로그램(1,426억 4,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조 2,613억 2,800만원과 경비 3,212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6,700만원, 평가손실 63억 4,000만원, 기타비용 16억 4,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5,272억 200만원, 이자수익 2억 100만원, 자산처분이익 46억 5,600만원, 기타수익 28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환수익 등은 제재금수익 3억 8,200만원, 기타재원조달및이전 841억 1,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466,362	83,595	382,767	457.9
가. 프로그램 총원가	466,874	83,595	383,279	458.5
나. 프로그램 수익	513	0	513	-
II. 관리운영비	1,582,585	1,889,662	△307,077	△16.3
III. 비배분비용	8,048	2,440	5,608	229.8
IV. 비배분수익	534,945	554,142	△19,197	△3.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522,050	1,421,555	100,495	7.1
VI. 비교환수익 등	84,493	54,942	29,551	53.8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437,557	1,366,613	70,944	5.2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2019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6조 6,242억 9,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조 7,983억 9,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740억 9,500만원(2.6%)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조 4,375억 57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700억 7,0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조 5,415억 8,3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2조 2,235억 3,3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6,819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700억 7,0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대법원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6,624,299	6,528,777	95,522	1.5
II. 재정운영결과	1,437,557	1,366,613	70,944	5.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541,583	1,408,384	133,199	9.5
IV. 조정항목	70,070	53,751	16,319	30.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6,798,394	6,624,299	174,095	2.6

자료: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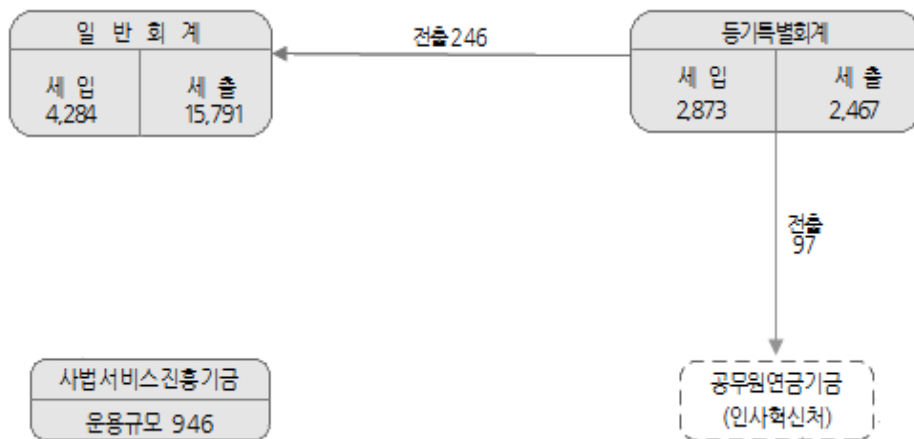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19회계연도 대법원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46억원 전출되었고, 등기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97억원 전출되었다.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면허료 및 수수료, ② 일반 인건비, ③ 교육원 인건비, ④ 연수원 인건비 ⑤ 기관운영 기본경비 ⑥ 본부운영지원 ⑦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⑧ 전문재판운영 ⑨ 등기업무 운영지원 ⑩ 사법서비스향상 사업 등이 있다.

세입예산 면허료 및 수수료는 최근 5년간 예산대비 수납액 부족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년 대비 증액분 72억 8,300만원(3,914억 2,300만원→3,84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다.

세출예산 일반 인건비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4,800만원이 감액(1조 1,120억 5,800만원→1조 1,072억 5,800만원)되었고, 교육원 인건비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3억 9,600만원 감액(54억 7,400만원→50억 7,800만원)되었고, 연수원 인건비 사업은 예결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1억원 감액(123억 4,900만원→122억 49,000만원)되었고,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은 예결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5억원 감액(715억 7,700만원→710억 7,700만원)되었고,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예결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2억 1,800원 감액(789억 6,600만원→787억 4,800만원)되었고,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은 예결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2억원 감액(95억 8,300만원→93억 8,300만원)되었고, 전문재판운영 사업은 예결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2억 300만원 감액(131억 7,200만원→129억 6,900만원)되었고,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은 상임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1억 5,000만원 감액(209억 7,800만원→208억 2,800만원)되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의 사법서비스향상 사업은 상임위 및 예결위 감액의견을 수용하여 2억 7,300만원 감액(302억 6,700만원→299억 9,400만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등이 있다.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등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업체에 대한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은 물론 해당 업체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대법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①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재판, ②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 ③ 재판이 중심이 되는 독립되고 민주적인 법원, ④ 국민이 다가가기 쉬운 법원, ⑤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는 법원, ⑥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을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여유자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탁출연금은 국회의 심사 단계에서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등 실적치를 토대로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법률 규정과 실제 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하고, 등기특별회계 수입 예산 과다 계상 문제를 개선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은 법원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과 재판활동에 대한 일반적 지원을 위한 단기 인력 운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추진하거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공탁법」 제5장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이다.

2019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은 계획현액 745억 6,700만원 대비 945억 6,900만원을 수납하여 200억 200만원의 초과 수납이 발생하였다. 지출은 계획현액 745억 6,700만원 대비 945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00억 5,200만원의 초과 집행이 발생하였다.

[2019회계연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결산(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수납률 (B/A)
	당초	수정			
총 계	74,567	74,567	74,567	94,569	126.8
기타재산수입 등	0	0	0	199	(순증)
기타경상이전수입	64,968	94,968	64,968	84,626	130.3
민간출연금(공탁출연금)	64,968	64,968	64,968	84,111	129.5
기타경상이전수입	0	0	0	515	(순증)
정부예금회수 (여유자금 회수)	9,599	9,599	9,599	9,744	101.5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회계연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결산(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초과집행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총 계	74,567	74,567	74,567	94,569	50	(20,052)	126.8
재판활동종합지원	49,534	49,534	49,534	45,569	50	3,915	92.0
사법제도개선 및 사법서비스진흥	49,420	49,420	49,420	45,501	50	3,869	92.1
기금운영비	114	114	114	68	0	46	59.6
사법정보화 운영	3,031	3,031	3,031	2,913	0	118	96.1
공탁업무 전산화	3,031	3,031	3,031	2,913	0	118	96.1
여유자금운용	22,002	22,002	22,002	46,087	0	(24,085)	209.5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공탁금 운용 수익금(이하 ‘공탁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 내용
소송구조 지원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민사소송비용 지원
조정제도 지원	조정위원 수당, 조정센터 운영 등 조정제도 운영 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등 민간경상보조
사법서비스 향상	가사비송, 소년보호재판, 사회적 약자 창구 등 운영 지원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공탁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정보화 사업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여유자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므로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계획(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2016년도 267.1%, 2017년도 170.6%, 2018년도 197.7%, 2019년도 209.5%로 매년 여유자금 집행액이 계획(현)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기금	계획(현)액(A)	51,590	50,500	58,336	74,567
	집행액(B)	53,818	54,479	65,121	94,569
여유자금 운용	계획(현)액(C)	2,083	5,934	9,939	22,002
	집행액(D)	5,563	10,122	19,646	46,087
	집행률(D/C)	267.1	170.6	197.7	209.5
전체 기금 대비 여유자금 운용 비율	계획(현)액 기준(C/A)	4.0	11.8	17.0	29.5
	집행액 기준(D/B)	10.3	18.6	30.2	48.7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전체 기금규모에서 여유자금 운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집행액 기준으로 2016년도 10.3%, 2017년도 18.6%, 2018년도 30.2%, 2019년도 48.7%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도부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사업비가 증액되고 있기는 하나, 여유자금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여 전체 기금에서 주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말 현재 여유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363억 4,200만원이 증가한 559억 8,8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주요사업비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 기금	계획(현)액(A)	51,590	50,500	58,336	74,567
	집행액(B)	53,818	54,479	65,121	94,569
주요사업비	계획(현)액(C)	49,407	44,466	48,303	52,451
	집행액(D)	48,169	44,260	45,418	48,414
	집행률(D/C)	97.5	99.5	94.0	92.3
기금규모 대비 주 요사업비 비율	계획(현)액 기준(C/A)	95.8	88.1	82.8	70.3
	집행액 기준(D/B)	89.5	81.2	69.7	51.2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여유자금 회수	여유자금 운용(예치)	여유자금 (연도말 현재)	전년 대비 증감
2016	0	5,563	5,563	5,563
2017	5,563	10,122	10,122	4,559
2018	10,122	19,646	19,646	9,524
2019	9,744	46,087	55,988	36,342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금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이 필요하나, 여유자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주요사업에 활용되고 있지 않는 자금으로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과다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유발하게 되어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2019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¹⁾에서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이 적정 규모를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대법원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개정(2020.3.4.시행)을 통하여 공탁출연금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종전 산정기준 대비 공탁출연금의 증가를 도모하는 한편, 해당 연도에 공탁금 보관은행이 납부

1)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2019.5.)

할 출연금액을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의 운용수익 감소 시에도 일정 수준의 공탁출연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²⁾

공탁금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변동과 같은 변수가 있기는 하나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공탁출연금 산정기준과 공탁금 평균 잔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공탁출연금 수입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불확실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사업 영역이 소송구조나 그 밖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등으로서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은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출연금은 국회의 심사 단계에서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등 실적치를 토대로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출연금은 2019년도에 계획(현)액 649억 6,800만원 대비 841억 1,100만원이 수납되어 191억 4,3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다.

2) 공탁금 운용수익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종전 정기에금 수익률이 아닌 해당 보관은행의 실제 자금운용 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공탁금 운용수익에서 공제하는 종전 공탁관련 업무원가를 포괄이윤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주요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민간출연금 (공탁출연금)	계획(현)액(A)	51,590	46,561	52,402	64,968
	수입액(B)	53,517	48,440	54,476	84,111
	집행률(B/A)	103.7	104	104	129.5
	초과수입분(B-A)	1,927	1,879	2,074	19,143
정부예금 회수 (여유자금 회수)	계획(현)액(C)	0	3,939	5,934	9,599
	수입액(D)	0	5,563	10,122	9,744
	집행률(D/C)	0	141.2	170.6	101.5
	초과수입분(D-C)	0	1,624	4,188	145
합계(초과수입분)		1,927	3,503	6,262	19,288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2019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영 결과 발생한 신규 잉여 채원으로서 기금의 지출 결산 상 여유자금 운영에서 대규모 초과 집행이 발생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2019년도 공탁출연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 산출근거		2019년도 공탁출연금 확정 당시 산출근거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전년도 운용수익	133,836	전년도 운용수익	151,237
이자비용(-)	18,400	이자(-)	19,139
보험료(-)	14,800	보험료(-)	11,573
업무원가(-)	35,700	업무원가(-)	36,344
공탁출연금	64,968	공탁출연금	84,181 ¹⁾

주: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한 공탁출연금은 공탁금관리위원회 운영비 7,000만원을 공제한 841억 1,100만원이다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의 공탁출연금 산출근거와 공탁출연금 확정 당시 산출근거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의 전년도 운용수익 항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탁출연금 초과수입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대법원은 2018년도의 공탁금 평균잔액 증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공탁금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이 상승된데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19년도 공탁출연금은 공탁금 보관은행의 2018년도 운용수익에서 이자비용 등 항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가 2019년 4월말까지 확정된 금액을 수납한 것인데,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³⁾ 공탁금 보관은행의 2018년도 운용수익을 가늠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로 공탁출연금 규모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탁출연금 수납 절차]

일정	내용
1월 5일까지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보관은행으로부터 전년도 납부 출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수납
1월 10일까지	공탁금관리위원회는 1월 5일까지 납부받은 출연금액에서 위원회 운영비를 뺀 금액을 기금에 출연
4월말까지	공탁금관리위원회는 해당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
5월말까지	공탁금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출연금액 중 1월 5일까지 납부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납
6월 10일까지	공탁금관리위원회는 5월말까지 납부받은 금액을 기금에 출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공탁출연금은 전년도 공탁금 운용수익 등 실적치를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탁출연금 산정의 기준연도인 전년도의 일정 시기에 이르면, 당시까지의 실적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당 연도의 공탁출연금 출연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국가재정법」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공탁출연금 수입 규모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신규사업의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나 사업의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배분이나 증감 등 효율적인 기금 재원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국회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출연금은 국회의 심사 단계에서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등 실적치를 토대로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19년도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¹⁾은 예산현액 746억 3,400만원 중 245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500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로의 전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로의 전출	74,634	74,634	0	0	74,634	24,586	0	50,048

자료: 대법원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은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는 등기특별회계의 잉여금 처리와 관련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되,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2007년도 이후 2009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일정액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150억원이 집행된 바 있고, 2014년도 이후에는 재배정 후 지출원인행위 누락으로 실제 전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2018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일정 금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등기특별회계 8010-800

2) 「등기특별회계법」 개정(2006.5.10. 법률 제7953호)으로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잉여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나. 분석의견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법률 규정과 실제 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하고, 등기특별회계 수입 예산과 과다 계상 문제를 개선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2014년도 이후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2015년도를 제외하면 집행액이 예산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³⁾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로의 전출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4	67,932	35,000	51.5
2015	78,510	78,510	100
2016	102,518	40,000	39.0
2017	94,303	39,671	42.1
2018	123,640	0	0
		(14,645)	(11.8)
2019	74,634	24,586	32.9

주: 1. 2018년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란의 집행액 및 순세계잉여금관의 괄호안의 수치는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위해 재배정이 이루어진 금액 기준

2. 지출란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 중 일반회계로의 전출 예산액을 제외한 금액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등기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어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 세입에 과부족을 초래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집행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일반회계로의 전출 예산액이 등기특별회계 예산 상 수입과 지출 간 수지 차에 해당하는 결산상 잉여금 예정액으로 계상되는 예산 편성 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3)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집행실적의 경우 150억원의 전출이 이루어진 2008년도를 제외하고 실제 전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전액 불용되어 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집행액은 해당연도의 전반적인 재정운용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에 수입과 지출 간 수지차에 해당하는 결산상 잉여금에서 사업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할 금액은 다음연도의 수수료 및 면허료 수입 추세, 신규사업을 비롯한 사업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도에 대법원은 결산상 잉여금 652억 5,300만원에서 사업비 이월액 86억 4,500만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566억 800만원 중 245억 8,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320억 2,200만원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입하였는데, 2014년 이후 평균적으로 250억원 수준의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 이입액으로 결정하여 왔다.

[등기특별회계 운영(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수입		지출					일반회계로의 전출		다음 연도 세입 이입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지출액	결산상 잉여금	사업비 이월액	세계 잉여금	예산액	집행액	
2014	287,906	281,031	219,974	206,815	74,216	10,240	63,976	67,932	35,000	28,976
2015	303,880	325,106	225,370	223,185	101,921	2,169	99,752	78,510	78,510	21,242
2016	322,871	282,057	220,353	213,945	68,112	3,784	64,328	102,518	40,000	24,328
2017	321,972	283,199	227,669	217,651	65,548	10,877	54,671	94,303	39,671	15,000
2018	364,274	284,349	240,634	242,065	42,284	1,753	40,531	123,640	0 (14,645)	40,531 (25,886)
2019	314,674	287,343	240,040	222,090	65,253	8,645	56,608	74,634	24,586	32,022

주: 1. 2018년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란의 집행액 및 순세계잉여금란의 괄호안의 수치는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위해 재배정이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

2. 지출란의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 중 일반회계로의 전출 예산액을 제외한 금액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의 전출액과 사업비 이월액, 다음연도 세입 이입액을 포괄하는 금액으로, 그 예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의 전출 예산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회계 또는 기금 여유재원의 전입 또는 전출을 통한 통합적 활용의 범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상당 규모의 금액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입하고 있는 등기특별회계의 실제 운영과 괴리된다.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2015년도와 같이 수입에서 상당 규모의 초과 수납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비 지출에서 대규모의 불용이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초과하여 편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등기특별회계 수입예산 과다 계상의 효과가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

등기특별회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의 과다 계상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수납실적이 부진하였다.

[등기특별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수입예산(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14	274,336	239,593	239,593	87.3
2015	282,570	278,736	278,736	98.6
2016	291,040	248,256	248,256	85.3
2017	291,427	240,935	240,935	82.7
2018	331,344	243,138	243,137	73.4
2019	288,294	241,731	241,730	83.8

자료: 대법원

사업비 예산액이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에 근거하여 편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등기특별회계 수입 과다 계상의 효과는 상당 부분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법률 규정과 실제 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하고, 등기특별회계 수입예산 과다 계상 문제를 개선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대법원은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¹⁾에 편성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내역사업을 통하여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도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의 예산현액은 10억 500만원으로, 9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향상	29,994	29,994	0	29,994	28,261	50	1,683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	8,022	8,022	0	8,022	7,579	50	393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1,005	1,005	0	1,005	965	0	40

자료: 대법원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은 2015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도까지 일반회계의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을 통하여 추진되다가 2017년도부터 사법서비스 진흥기금으로 이관되었다.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에 대한 인건비(일용임금) 8억 2,000만원, 고용부담금 1억 200만원, 의견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 협의 경비(일반수용비)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4

나. 분석의견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은 법원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과 재판활동에 대한 일반적 지원을 위한 단기 인력 운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추진하거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은 보안, 홍보·소통, 전산, 관리 등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인턴이라는 명칭 하에 보안 분야와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50명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채용하여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집행 실적			내 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분야	인원
2016	1,057	1,007	50	보안직	44명
				관리직	6명
2017	905	867	38	보안직	44명
				관리직	5명
2018	905	877	28	보안직	44명
				관리직	5명
2019	1,005	965	40	보안직	44명
				관리직	5명

자료: 대법원

그런데,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의 추진 실적에 따른 사업의 성격 및 내용과 「공탁법」에 규정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추진하거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채용공고에 따르면, 보안 분야의 직무 내용은 법원청사 내·외곽 보안업무 지원, 법정 검색대 운영업무 지원, 법정 내·외 보안업무 지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 분야의 직무 내용은 공용차량 운전 및 유지·관리, 전용차량 운전 및 신변보호업무, 민원업무 및 사법행정업무 보조, 기타 소속 기관장이 지

정하는 업무로 되어 있는 바, 법원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과 재판활동에 대한 일반적 지원을 위한 단기 인력 운용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직무내용]

구분	직무	세부사항
보안	법정질서 유지	- 법정 출입 인원내 대한 보안검색 - 법정 내에서 증인 및 방청인 신변보호 - 개정 시 법관 신변보호 - 법정 내·외에서 소란행위 예방 및 질서유지 활동 - 기타 법정질서에 관련되거나 지시받은 사항 수행
	법원 청사 방호	- 청사 내·외곽 경비 - 청사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및 안내 - 청사 내 인가되지 않은 인원 출입 통제 - 각종 시위와 청사 내 소란행위 예방 및 차단업무 - 법관, 법원공무원, 당사자 및 증인의 신변보호 - 법원 내 차량통제 및 주차질서유지 - 기타 청사방호에 관련되거나 지시 받은 사항 수행
	기타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업무	- 법정 내에서 소란행위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초동 조치 - 법원 청사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업무 - 청사 내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초동 대처 업무
관리	공용차량 운전 및 유지관리	- 채용예정기관의 공용차량 운전(승용, 승합, 버스)
	전용차량 운전 및 신변보호업무	- 채용예정기관 기관장 등의 전용차량 운전
	민원업무 및 사법행정업무 보조	- 민원 및 행정보조 업무
	기타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기타 소속 기관장 지정 업무

자료: 대법원 법원행정인턴 채용 공고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탁법」 제31조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

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법
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은 민원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일부 가능성을 감안하더
라도 전반적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업무지원 인턴 사업이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를 통해 사법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취지와 부합되고, 법원 사법행
정업무를 지원하는 인턴을 채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법서비스 개선을 촉진
하는 한편 청년인력의 경력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탁법」에
따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를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금의 설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¹⁾은 사법행정 능력 향상 및 사법부 구성원 역량 강화,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복지 증진 등을 통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는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현액은 4억 7,900만원으로, 4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국내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9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874	11,874	0	0	11,874	11,295	233	346
국내여비(220-01)	300	300	0	179	479	470	0	9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에 편성된 국내여비를 기본경비 성격의 이전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기본경비로의 재원 이관을 포함하여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전비 지원은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나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사화물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라 시행하여 온 제도이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42-401

2017년도 이후 대법원의 이전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경우 기관운영 기본경비 외에 재판일반경비 지원(일반회계), 사법서비스 향상(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기업무운영지원(등기특별회계) 등 사업에 편성된 국내여비를 이전비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외에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일반회계)에 편성된 국내여비를 이전비로 집행하였다.

[대법원 이전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구분	세부사업명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일반회계	기관운영기본경비	1,093	103	1,151	148	1,002	376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0	0	0	0	479	470
	재판일반경비지원	276	276	289	289	0	0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사법서비스향상	224	224	207	207	0	0
등기특별회계	등기업무운영지원	5	5	0	0	0	0

주: 2019년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을 제외한 이전비 집행액은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명목으로 재배정된 금액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대법원이 2019년도에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의 국내여비를 이전비로 집행한 것은 국내여비 비목의 용도에 부합하는 재원의 활용 방안을 강구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²⁾

다만, 2019년도에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의 국내여비를 이전비로 집행한 것은 기관 운영의 기본적 소요경비에 해당하는 이전비를 기관운영 기본경비 외의 다른 주요 사업에 편성된 국내여비 재원을 융통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전비 집행 관행의 문제점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2)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의 국내여비는 2018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법관제 폐지 후 지방근무 법관 비중이 증가함에 따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 명목으로 국회 증액 예산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에 해당 예산은 전액 불용된 바 있는데, 대법원은 주거지 외 다른 지역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여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며, 2019년도에는 ‘지방근무 법관 및 직원 이전비 등’ 명목으로 편성하여 이전비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은 기관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기본경비 사업과 구별되는 고유한 사업 목적³⁾을 가지고 있고,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은 다른 프로그램(항)에 편성되어 있는 바, 프로그램(항)이 다른 두 사업의 재원이 이전비라는 동일한 용도로 집행되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편성체계]

세부사업명	프로그램(항)	단위사업(세항)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법행정운영지원(7000)	본부 기본경비(7011)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재판활동 지원(1100)	사법행정 효율성 증진(1142)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에 편성된 국내여비를 이전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기본경비로의 재원 이관을 포함하여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사법행정 능력 향상 및 직원 역량 강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유도,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다양한 통로 마련,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 등 직원 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가. 현 황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¹⁾은 국가기관 및 민간 분야의 정형·비정형 등기 정보 요청에 적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과 방식의 사용자 맞춤형 등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2019년도 예산현액은 62억 6,200만원으로, 44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5,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6,071	6,071	0	191	0	6,262	4,422	1,653	187

자료: 대법원

동 사업은 물적편성주의²⁾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등기시스템이 2015년 국세청의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17만명에 대한 근저당권 및 소유권 자료 요청, 2016년 인사혁신처의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22만명에 대한 소유권·근저당권 등 부동산 등기정보 요청, 2016년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격 검증 및 부정 방지를 위한 부동산등기정보와 법인등기정보 연계 요청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 요청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대량의 등기정보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되었다.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등기특별회계 1334-306

2) 부동산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등기부에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 기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를 소유자로 편성하는 인적편성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나. 분석의견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은 장비 도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집행연도에 예산 조정을 통하여 집행하였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 추진 1차 연도인 2018년도의 예산에 장비 도입 사업을 위한 임차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집행연도 중 장비 도입을 위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여 등기업무전산화 사업³⁾에 편성된 임차료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한 바 있다.⁴⁾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리스방식의 장비 조달을 전제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조달물자(물품)구매 입찰 공고를 진행하여 7월 11일 취득원가 8억 6,9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차년도 리스대금(1분기분) 4,800만원을 등기업무전산화 사업에서 조정한 임차료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2019년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의 임차료 조정액 1억 9,100만원은 등 장비 도입 사업의 2차 연도 리스대금(4분기분) 지급을 위한 경비로,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은 장비 도입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2개 연도에 걸쳐 동일한 사유로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였다.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장비 도입 관련 예산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비목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비목	
2018	등기업무 전산화 (1149-503)	210-07	48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1149-504)	210-07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장비 도입 임차료 확보
2019	등기업무 전산화 (1334-305)	210-07	191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1334-306)	210-07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 장비 도입 임차료 확보

자료: 대법원

3) 코드: 등기특별회계 1334-305

4) 대법원에 따르면,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이행계획상 2단계 사업에서 장비구입을 예정하여 1단계 사업(2018년)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의 시급성으로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장비 도입 사업의 추진 경과와 정부예산안 편성 시기가 괴리되는 문제로 인하여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2차 연도 리스대금 임차료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달물자(물품)구매 입찰 공고가 2018년 5월에 시작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바, 2019년도의 경우 정부예산안의 편성과 국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의 장비 도입 사업은 1차 연도 임차료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조정을 통하여 장비 리스사업이 추진되어 국회에 예산 정보가 투명하게 제출되지 못한 채 임차기간 5년의 다년도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2차 연도 임차료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집행 행태가 반복되었다.

대법원은 2020년도 예산안에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의 장비 도입 사업의 3차 연도분 리스대금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회에서 확정되었으나, 동 사업은 2개 연도에 걸쳐 국회에 예산 정보가 투명하게 제출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며, 2019년도의 경우 소요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비를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집행연도에 예산조정을 통하여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600만원이며, 3,52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모두 수납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9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6	26	26	35	35	0	0	100.0

자료: 헌법재판소

2019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78억 7,600만원이며, 이 중 91.2%인 436억 6,61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2,988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9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7,876	47,876	47,876	43,666	1,780	2,430	91.2

자료: 헌법재판소

나. 재무 결산

2019회계연도 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자산은 1,962억 5,340만원, 부채는 42억 460만원으로 순자산은 1,920억 4,88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458억 3,511만원(30.5%)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2억 5,209만원, 일반유형자산 1,918억 4,901만원, 무형자산 41억 4,628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토지 재평가와 헌법재판소 증축 공사 관련하여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의 증가 458억 4,118만원에 주로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7,197만원(1.7%) 증가한 것으로 유동부채 14억 4,230만원, 장기차입부채 27억 6,23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유동성금융리스부채의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5,683만원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 산	196,253	150,418	45,835	30.5
Ⅰ. 유동자산	252	170	82	48.2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191,849	146,008	45,841	31.4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4,146	4,235	△89	△2.1
Ⅵ. 기타비유동자산	6	6	0	0
부 채	4,205	4,133	72	1.7
Ⅰ. 유동부채	1,442	1,385	57	4.1
Ⅱ. 장기차입부채	2,762	2,747	15	0.5
Ⅲ. 장기충당부채	0	0	0	0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192,049	146,286	45,763	31.3
Ⅰ. 기본순자산	93,090	93,090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5,007	△2,533	7,540	0
Ⅲ. 순자산 조정	93,951	55,728	38,223	65.6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19년도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는 481억 2,013만원이다.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481억 5,535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522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1억 8,842만원(2.5%) 증가한 481억 2,013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1억 8,763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19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	48,155	46,968	1,187	2.5
II. 관리운영비	0	0	0	0
III. 비배분비용	0	0	0	0
IV. 비배분수익	35	36	△1	△2.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8,120	46,932	1,188	2.5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8,120	46,932	1,188	2.5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19년도 기초순자산은 1,462억 8,566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920억 4,880만원으로 기초 대비 457억 6,314만원(31.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 헌법재판소 증축공사로 인한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56억 6,005만원과 토지재평가로 인한 조정항목 382억 2,323만원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2019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556억 9,527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522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토지재평가로 인한 자산재평가이익 382억 2,323만원으로 구성된다.

[2019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146,286	146,260	26	0.0
II. 재정운영결과	48,120	46,932	1,188	2.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5,660	46,987	8,673	18.5
IV. 조정항목	38,223	△30	38,253	127,510.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92,049	146,286	45,763	31.3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본부기본경비, ② 본부운영지원, ③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④ 국제교류 사업이 있다.

본부기본경비는 ‘유류비’ 조정으로 1,500만원이 감액(2억 1,500만원→2억원)되었다.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의 조정으로 5백만원이 감액(5,000만원→4,500만원)되었고,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 행사 사업의 전액 삭감에 따라 2,400만원이 감액되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알기 쉬운 헌법’ 사업의 조정으로 2,000만원이 감액(3,700만원→1,700만원)되었다.

국제교류 사업은 ‘주요 헌법기관 등 세미나 개최’ 사업의 조정으로 2,200만원이 감액(5,500만원→3,300만원)되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체계 구축, ②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③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 확충, ④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2019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9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상용직 근로자 관련예산은 인력운용 규모에 대한 추계 미흡, 보수 지급 기준 및 항목의 변경, 연례적 불용 재원의 관성적 편성에 기인하여 사업간 조정을 통한 상호융통 규모가 다시 증가하였는 바, 안정적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상용직 근로자 관련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헌법재판소는 본부기본경비,¹⁾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²⁾ 및 본부운영지원 사업³⁾을 통하여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시설관리·환경미화 공무원 등 상용직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상용임금 예산현액은 13억 8,000만원으로 13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고용부담금 예산현액은 2억 7,8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4,8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9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상용임금(110-03)	1,380	1,380	0	0	1,380	1,360	0	20
본부기본경비	486	486	0	△51	435	425	0	10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148	148	0	25	173	172	0	1
본부운영지원	746	746	0	26	772	763	0	9
고용부담금(320-09)	278	278	0	0	278	230	0	48
본부기본경비	115	115	0	△4	111	92	0	19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27	27	0	4	31	30	0	1
본부운영지원	136	136	0	0	136	108	0	28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민성철 예산분석관(minski@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11-250

2) 코드: 일반회계 1011-251

3) 코드: 일반회계 1032-302

나. 분석의견

헌법재판소의 상용직 근로자 관련예산은 인력운용 규모에 대한 추계 미흡, 보수 지급 기준 및 항목의 변경, 연례적 불용 재원의 관성적 예산 편성에 기인하여 사업 간 조정을 통한 상호융통 규모가 다시 증가하였는 바, 안정적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헌법재판소의 상용직 근로자 관련 예산⁴⁾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사업 간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정 규모가 2016년도 1억 1,400만원, 2017년도 1억 3,000만원에서 2018년도에 400만원 수준으로 감소되었다가 2019년도 들어 5,5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2016~2019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상용직 근로자 관련 예산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조정내역			
	구분	금액	~에서	~으로
2016	기타직보수	95	114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연금지급금	19		
2017	상용임금	113	130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고용부담금	17		
2018	상용임금	4	4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2019	상용임금	25	55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고용부담금	4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상용임금	26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2019년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의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사무보조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을 위한 것으로 상용임금 1억 4,800만원, 고용부담금 2,700만원 등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무보조원 운용 인원에 대한 편성 당시 예측치와 집행연도 실제 운영 인원 간 차이에 기인하여 과부

4) 2016년도까지는 기타직보수(110-02) 및 연금지급금(320-03)으로 편성되었으나, 2017년도부터 상용임금(110-03) 및 고용부담금(320-09)로 편성되고 있다.

족이 발생함에 따라 본부기본경비의 상용임금 2,500만원과 고용부담금 400만원 등 2,900만원을 조정하여 집행하였다.

본부운영지원 사업의 상용임금은 2019.1.1.일자로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시설관리·환경미화 근로자(25명)에 대한 보수 등 지급을 위한 것으로 6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본부기본경비에 편성된 상용임금 2,600만원을 전용하는 한편, 같은 본부운영지원 사업 내 홍보(공보)활동 내역사업의 기간제근로자를 운용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상용임금 2,200만원을 추가하여 보수체계를 확정·집행하였다.⁵⁾

본부운영지원 사업 내 홍보(공보)활동 내역사업⁶⁾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고용보험금의 경우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이 계속 전액 불용되어 왔으며, 2019년도에는 보수 지급을 위한 상용임금이 전액 시설관리·환경미화 근로자(25명)에 대한 보수 등 지급에 활용되고 고용부담금은 전액 불용되었다.

이와 같은 상용직 근로자 관련예산의 사업 간 조정을 통한 상호융통은 인력운용 규모에 대한 추계 미흡으로 인한 편성액과 실제 소요액 간의 괴리, 보수 지급 기준 또는 항목의 변경, 연례적 불용 재원의 관성적 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안정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헌법재판소는 다른 상용직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열악했던 시설관리·환경미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6) 홍보(공보)활동 내역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1031-301)에 편성되어 오다가 2019년도부터 본부운영지원 사업(1032-302)에 편성되고 있다.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욱 사업평가심의관
신 은 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 태 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정 현 하 예산분석관
김 수 진 예산분석관
민 성 철 예산분석관
심 성 택 예산분석관

지 원 | 이 정 아 행정실무원
송 은 혜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0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
편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특수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87-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0